

인권정보자료실
Md1.43

2003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상담결과보고서

일상적 장애차별 실태와 대응방안
- 2003 인권센터 상담분석을 통해 본 차별실태와 대응방안 -

2003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상담결과보고서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서울시 서초구 방배1동 924-13 근복빌딩 6층 (134-083)

T. 521-5364, 521-8298 F. 584-7701 / <http://www.cowalk.or.kr>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서울시 서초구 방배1동 924-13 근복빌딩 6층 (134-083)

521-5364, 521-8298 F. 584-7701 / <http://www.cowalk.or.kr>

2003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상담결과보고서

일상적 장애차별 실태와 대응방안
- 2003 인권센터 상담분석을 통해 본 차별실태와 대응방안 -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서울시 서초구 방배1동 924-13 근복빌딩 6층 (134-083)

T. 521-5364, 521-8298 F. 584-7701 / <http://www.cowalk.or.kr>

<표 1> 장애유무 및 등록여부	6
<표 2> 장애유형별 상담건수	7
<표 3> 장애유형별 상담의뢰자 여부	8
<표 4> 2003 장애유형과 상담유형	9
<표 5> 성별 상담건수	10



<표 6> 성별 상담의뢰자의 본인여부	10
<표 7> 지역별 상담건수	11
<표 8> 내담자의 수급권여부	12
<표 9> 내담자의 수급권여부에 따른 상담유형	12
<표 10> 상담의뢰자의 본인여부	13

<표 11> 내담자의 연령 대	14
<표 12> 내담자의 연령대와 상담유형	14
<표 13> 상담유형별 상담건수	15
<표 14> 노동권의 침해	17
<표 15> 여성장애인권리의 침해	21

<표 16> 생존권의 침해	22
<표 17> 건강권의 침해	24
<표 18> 교육권에서의 침해	26
<표 19> 문화향유권에서의 침해	30
<표 20> 접근권에서의 침해	32



표는 어디에?

<표 21> 국선변호인의 선정	34
<표 22> 지원서비스에서의 침해	35
<표 23> 소비자권리에서의 침해	37

<표 24> 형사상권리에서의 침해	40
<표 25> 형사상권리에서의 침해	42
<표 26> 가족권에서의 차별실태	44
<표 27> 신체자유권리의 침해	47
<표 28> 재산권의 침해	49

<표 29> 정보제공 실태	53
<표 30> 정책건의 실태	56
<표 31> 정서적 지지	57
<표 32> 기타상담	58
<표 33> 보조인의 자격	122



<표 34> 보조인의 신고 절차	123
<표 35> 국선변호인의 선정	127
<표 36> 재판서 등의 작성	128
<표 37> 피고인 및 증인에 대한 신문방법	130
<표 38> 장애인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선언적 규정 마련	131



<발간사>

다 한 사람의 차별도 어찌는 나 가지...

김정열(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세상 참 많이 변했다. 최근 장애관련 소식을 보면 온통 장애차별 철폐를 주제로 하고 있다. 이번 17대 총선에서도 주요 정당의 장애관련 공약 제1순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이었다. 그동안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해 불쌍해서 떡 하나 주던 시각과는 정 반대 현상이다. 불과 4년 전인 16대 총선에서의 장애관련 공약의 가장 우선순위는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수당을 올려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장애문제를 인권침해 방지를 최우선정책으로 챙기겠다는 장애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는가 보다.

문제는 말로만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의 눈초리가 쉽게 거두어지지 않는다는데 있다. 지난 16대 총선에서 장애인수당을 월 4만5천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여야가 모두 약속했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후에 이 약속은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지표시는 정부도 한바 있다. 그러나 정부정책은 여전히 시설중심의 분리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장애문제를 너무 쉽게 말로만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아닌지 그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그렇다는 말이다.

어쨌든 바야흐로 장애문제를 인권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데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조짐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우리 연구소가 「장애우인권센터」 업무를 구분해서 보기 시작한 첫 해부터 상담내용이 그랬다. 그동안 차별을 받아왔던 장애당사자와 그 가족들이 자신의 문제를 밖에서 쏟아내기 시작했다. 성폭력 당해왔던 정신지체여성, 학교로부터 외면당하면서도 참는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던 자폐 아동을 둔 부모, 지하철에서 자리 달라고 눈치조차 준 적이 없는 데도 괜히 욕지거리를 들어야 했던 50대의 다리가 불편한 여성, 생활시설에서 인간대접 받지 못하면서도 참고만 살아왔던 시설생활자와 생활교사들, 뇌졸중으로 편마비 후유증이 있다는 이유로 교사복직을 거절당하고 그냥 포기할까 했던 전직 교사부부 등 이러저러한 상담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아직도 장애문제는 복지서비스를 더 확보하는 방식으로만 해결하려는 경향이 우세하다. 정부도 그렇고, 장애관련 복지기관도 그렇다. 정치권도 여전히 그렇고 일반 시민사회단체가 가지고 있는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생각도 별반 차이가 없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어딘가 모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도와주기만 하면 고마워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진정한 친구가 되려고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30이 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겨 목욕시키는 장면을 자랑스럽게 연출하면서도 인권침해를 하고 있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냥 도움을 주고 싶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공기(公企)라고 할 수 있는 방송사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벌거벗겨진 성인 남성을 여과 없이 방송에 내보냈다. 최소한 장애를 가진 사람을 인간으로 생각했다면 그 부분만이라도 가렸을 것이고, 그 사람의 얼굴은 내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아직도 장애를 가진 사람을 어린아이로, 동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가슴이 미어지는 사례가 우리 사회에서 계속 생산되고 있다.

우리 연구소가 매년 상담사례집을 발간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이렇게 세미나를 조직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통계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 하나 사례를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인권침해를 당한 그 사람은 단 한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재로 인정받아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 하나의 사례는 그만큼 소중하고 잇을 수 없다. 다시 이러한 비슷한 인권침해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정말 잊지 말아야 하고 반드시 대응해야 한다. 잊어버리고 대응을 피하려는 순간 장애차별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상담을 통해 단 한사람의 문제만 해결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연구소의 사회적 역할에 있어 나름대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2003년 우리 연구소에 상담을 의뢰한 한사람 한사람을 진정성을 가지고 대면했는지는 우리의 반성으로 남겨둔다.

다만 지난 일년동안 남들이 피하고 싶은 업무를 천직처럼 여겨주신 인권센터 활동가들과 특히 상담을 맡아주신 김희선 간사에게 지면을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03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상담 분석

김희선(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간사)

I. 앞말

1년간 축적된 상담사례를 분석한다는 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제기하는 일상적·사회적 문제를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장애로 인한 일상적·사회적 차별상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현실적 상황에서 그나마 생생한 사례를 통해 장애문제 실태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에 접수된 상담사례분석은 의의가 크다고 생각한다.

현장에서 매일 전화와 방문을 통해 끊임없이 답변과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전체 분석사례수를 볼 때 평균 1일 2건 정도의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지만 실상 하나하나의 상담이 수차례의 전화와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해 수천통의 전화와 온라인접속, 만남이 이루어진다. 일단 상담이 접수되면 가능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과 사실 확인, 개입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나름대로 열의를 가진 활동가들이 모여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을 수시로 나누면서 상담내용에 대응하려 하지만 돌이켜 보면 제대로 된 답변조차 드리지 못하고 묻혀 버린 사례들이 많았음을 고백한다. 개인적으로 가능한 월별추이를 들여다보고 좀 더 큰 틀에서 인권상담에 대한 대응을 하려 했으나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월별추이를 살펴볼 겨를조차 없었다. 그러므로 이번 상담분석은 인권센터 활동가들에게 우리의 활동을 돌아볼 중요한 시간이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일상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느끼고, 생각하고, 부딪치는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우리 사회 소수자로서 살아가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삶의 구체적 모습, 사회적 약자가 제기하는 어려움의 문제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권센터의 상담은 당사자가 장애를 이유로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느껴야 하는 부당함, 분노감, 억울함 등이 정당한 감정임을 수용해주고 지지하여 문제 상황을 직시하도록 하는 과정이다. 그러한 감정이 '차별'임을 인식하게 될 때 당사자가 올바르게 문제를 파악하게 되는 것이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사회활동 경험의 부족으로,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체내화되어, 나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로 자신이 당하는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설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소 등을 찾아도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바꾸라"거나 "나이가 몇 살인데 우느냐"라는 말을 듣기 일쑤다. 그래서 장애를 이해할 것이라는 최소한의 '기대'를 가지고 장애관련 상담소를 찾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권센터의 상담은 단순한 정보제공과 정서적 지지 보다는 내담자가 장애로 인해 겪는 다양한 문제와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여 인권확보를 하는데 큰 의미를 둘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상담에 대해 어떠한 대처가 이루어졌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당초 대처과정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고자 하였으나 한정된 인력과 자원을 가지고 모든 상담사례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대처과정은 복지시책에 관련된 문의나 단순한 법률적 정보가 요구되는 사례에 관해서는 정확한 답변이 제시될 수 있지만, 복잡 미묘한 삶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상황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실제로 폐쇄적인 시설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확인하기 위해 활동가의 가족을 알콜에 중독된 사람으로 속여서 시설 운영진들과 상담을 해야 할 때도 있었다. 또 재직 중 발생한 사고에 의해 장애가 발생하여 해고위험에 처해있으나 당사자가 직접 나서기 어려운 경우 언론취재를 섭외하여 문제상황이 표면화되는 것을 막은 경우도 있었으며 법제개정 활동까지 다양한 대처가 필요했다.

분석방법 및 기술은 지난 2003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상담내용에 대하여 내담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다음으로 장애인차별유형화 분석틀¹⁾에 의해 상담유형을 권리영역별 16가지 영역, 그 외 4가지 영역의 대분류 20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상담을 정리하였다.

본론에서는 상담사례 730여건을 중심으로 상담의 유형, 유형별 사례의 의미와 대처과정, 상담활동시 어려움, 과제 등을 살펴볼 것이다.

II. 본말

1. 상담의 일반적 현황

본 분석자료는 2003년 동안 빨리고발전화(8298), 그 외 일반전화, 장애인전화 상담, 온라인 상담을 취합해 차별유형화 틀에 의해 분류한 것이다. 2003년간 접수된 730여건의 상담에 대하여 차별유형화틀로 분류하여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유형별 분류는 상담을 담당인 인권센터 활동가 4명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문제발생의 사회적 원인을 유추하여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가능한 유형분석틀에 의해 분류하고자 하였으나 워낙 장애를 가진 사람의 상담내용이 다양할 수 밖에 없어 기타로 분류된 항목이 많을 수 밖에 없었다. 상담사례수는 상담가에 따라 각 회차별 상담내용을 별도의 상담사례로 입력된 경우도 있으나 대개 하나의 상담내용은 전화 및 만남의 수와 관계없이 하나의 사례로 산정하였다. 따라서 분류방식에 있어서는 차후 일관된 틀로 정리할 필요가 있음을 과제로 밝힌다.

1)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상담유형 분류표: 박옥순의 인권지표개발연구(2002)를 바탕으로 인권센터에서 상담내용에 맞게 재정리한 분류표.(상담유형 분류표는 부록 참조)

1) 장애유형

<표 1> 장애유무 및 등록여부

알 수 있음	2002		장애 있으나 등록여부 알 수 없음	2003		2002~2003		장애 있으나 등록여부 알 수 없음
	유			유		유		
	등록	미등록	등록	미등록	등록	미등록	등록	미등록
	561	16	116	308	30	869	46	116
알 수 없음	87		390		477			
총 계	780		728		1508			

대부분의 상담내용은 당사자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거나 가족 중에 장애가 있거나 관련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전체 728건중 등록장애인은 308명, 미등록은 30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알수없음의 경우도 390건이나 되어 50%이상을 차지하는데 이는 상담일지에 장애유무가 표시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보다 질 높은 데이터를 생성해내기 위해 내담자의 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내담자 입장에서 생각할 때 '굳이 상담내용과 무관한데도 개인의 정보를 밝혀야 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과도한 집적이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먼저 자신의 장애유형을 얘기해 준다면 표시가 되지만, 상담과정에서 일 부러 먼저 질문하지는 않는다.

<표 2 > 장애유형별 상담건수

	2002		2003		2002~2003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지체	371	47.6	126	17.3	497	32.9
뇌병변	20	2.6	25	3.4	45	3.0
시각	78	10.0	47	6.5	125	8.3
청각	22	2.8	20	2.7	42	2.8
언어	8	1.0	2	.3	10	.7
정신지체	42	5.4	65	8.9	107	7.1
정신	20	2.6	27	3.7	47	3.1
발달	3	.4	3	.4	6	.4
심장	1	.1	1	.1	2	.1
신장	5	.6	3	.4	8	.5
화상	1	.1			1	
간장			1	.1	1	
합계 (미등록포함)	571	73.2	320	44.0	891	59.1
장애가 없거나 모르거나	209	26.8	408	56.0	617	40.9
총합계	780	100.0	728	100.0	1508	100.0

장애유형별로 보면 2002년에는 지체 47.6%, 시각10.0%, 정신지체5.4%, 청각 2.8% 순으로 나타나고, 2003년에는 장애유형이 파악된 44%의 상담내용중 지체 17.3%, 정신지체 8.9%, 시각 6.5%, 정신 3.7% 순으로 나타난다. 전년도에 비해 정신적 장애로 인한 상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정신지체와 정신장애 즉 정신적장애가 12.6%로 전체 2위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가 발전할수록 사회제반 구조 및 시설 등 물리적 환경이 개선되고 따라서 신체적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줄어드는 반면 정신적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실태를 시사한다.

<표 3> 장애유형별 상담의뢰자 여부

	2002					2003					2002 ·2003 누적
	본인	가족	친척	대리인	총계	본인	가족	친척	대리인	총계	
지체	257	56	4	28	345	104	12	5	5	126	471
뇌병변	9	5		1	15	17	7		1	25	40
시각	68	2		4	74	42	4		1	47	121
청각	9	9		3	21	16	2		2	20	41
언어	4	2		2	8	2				2	10
정신지체	4	26	5	5	40	15	39	2	9	65	105
정신	7	12	1		20	18	5	3	1	27	47
발달		1		1	2		2		1	3	5
심장	1				1	1				1	2
신장	4	1			5	3				3	8
화상	1				1						1
간장						1				1	1
총계	364	114	10	44	532	219	71	10	20	320	852

상담유형별 상담의뢰자를 보면 대부분이 본인이 직접 상담하는 경우가 많다. 본인의 문제를 당사자가 의뢰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신지체의 경우는 가족에 의해 의뢰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며 한편 정신적 장애인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수 있 기위한 운동과 사회적 배려가 절실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 4> 2003 장애유형과 상담유형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정신 지체	정신	발달	심장	신장	간장	총계
노동권	12	7	5	4			3			2		33
여성장애인권리	1	2		2			1					6
생존권	11		3	1		1	4					20
건강권	1			1			1					3
교육권	3	1		1		6		1				12
문화향유권												
접근권	5	3	3									11
정보접근권	5		3	1			1					10
지원서비스	5		3				1					9
소비자권리	14	3	6	2		9	4	1	1			40
형사상권리	9		3	1		4						14
시설장애인권리		1				3						4
가족권	5	1				9	2					17
신체자유권리	5		3			4	2	1				15
재산권	11		4	3		15						33
정보제공	36	6	12	4	2	11	6			1		78
정책건의	3	1									1	1
정서적지지		1	1			6	1					9
기타	4	1	2				2					9
합계	130	27	48	20	2	68	28	3	1	3	1	331

상담유형은 '소비자권리 침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장애는 노동권 12건, 생존권 11건, 소비자권리 11건순으로 나타난다. 정신지체장애는 재산권 15건, 소비자권리와 가족권에서 각각 9건으로 나타난다. 정신지체인의 경우 주요 사례 발표시 자세히 다루겠지만 재산권 침해가 두드러지는 상황임을 보여준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노동권 5건, 소비자권리 6건 등으로 나타난다. 특히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경우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정보제공에 대한 상담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보접근에 보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유추해 볼수 있다.

2) 성별

<표 5> 성별 상담건수

	2002	2003	누적 빈도
	빈도	빈도	
여자	213	145	357
남자	425	583	1008
합계	638	728	1366
알 수 없음	142		142
총계	780	728	1508

<표 6> 성별 상담의뢰자의 본인여부

	2002					2003				
	본인	가족	친척	대리인	총계	본인	가족	친척	대리인	총계
여자	134	43	5	23	205	112	18	2	13	145
남자	308	72	4	21	405	477	75	13	18	583
총계	442	115	9	44	610	588	93	15	31	728

상담내용을 성별로 살펴보면 여자 145건, 남자 58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2년에 비하여 남성의 상담빈도가(583)가 높아진 결과인데, 인권센터 상담프로그램상 성별을 입력하지 않으면 무조건 남성으로 산입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므로 2002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남성이 더 많이 늘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프로그램상 오류를 제외하고서도 여전히 여성보다는 남성들의 상담빈도가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이는 여성보다는 남성들의 사회 참여가 높고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3) 지역

<표 7> 지역별 상담건수

지역명	2002		2003		누적건수	누적퍼센트
	건수	퍼센트	건수	퍼센트		
모름	380	48.7	554	76.4	934	61.9
서울	189	24.2	78	10.8	267	17.7
경기	146	18.7	43	5.9	189	12.5
인천	14	1.8	7	1.0	21	1.4
강원	5	.6	3	0.4	8	.5
충북	3	.4	5	0.7	8	.5
충남	9	1.2	3	0.4	12	.8
대전	2	.3			2	.1
전북	10	1.3	6	0.8	16	1.1
전남	3	.4	7	1.0	10	.7
광주	4	.5	3	0.4	7	.5
경북	1	.1	3	0.4	4	.3
경남	6	.8	7	1.0	13	.9
대구	1	.1	3	0.4	4	.3
울산	2	.3	1	0.1	3	.2
부산	4	.5	4	0.6	8	.5
제주	1	.1			1	.1
합계	780	100.0	728	100.0	1508	100.0

상담의뢰자의 지역별 특성을 보면 지역이 파악된 총 174건 중 서울, 경기, 인천 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수도권 지역에서의 의뢰자 수가 많은 것은 연구소가 서울에 위치하여 공간적 접근이 용이하다는 것과 높은 인구 밀집도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수도권 집중현상은 2002년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상담의뢰자의 거주지역에 있어 '모름'이 76.4%로 나타나는 것은 이 역시 상담내용상 필요한 경우에만, 또 지역을 얘기할 때만 표시한 데 따른 것이다.

4) 수급권 여부

<표 8> 내담자의 수급권 여부

	2002	2003	2002~2003
	빈도	빈도	빈도
수급권자	60	24	84
수급권자 아님	150	42	192
합계	210	66	276
알 수 없음	570	662	1232
총합계	780	728	1508

상담내용 728건 중 수급여부를 알 수 있었던 것은 66건이었으며 그중 수급권자는 24건이다. 마찬가지로 상담일지 기록시 필요한 경우에만 표시된다. 특히 상담유형중 생존권으로 분류된 경제적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수급권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표 9> 내담자의 수급권여부에 따른 상담유형

	2002			2003			수급권자	수급권자 아님	총계
	수급권자	수급권자 아님	총계	수급권자	수급권자 아님	총계			
노동권	1	17	18		5	5	1	22	23
여성장애인권리	2	1	3	1	2	3	3	3	6
생존권	8	10	18	4	5	9	12	15	27
건강권	4	0	4		1	1	4	1	5
교육권	1	2	3				1	2	3
문화향유권	0	1	1					1	1
접근권	1	2	3	2	2	4	3	4	7
정보접근권	1	0	1				1		1
지원서비스	6	22	28		1	1	6	23	29
소비자권리	2	15	17	3	5	8	5	20	25
형사상권리				1		1	1		1
시설장애인권리	0	3	3	1		1	1	3	4
가족권	5	6	11		1	1	5	7	12
신체자유권리	3	1	4	3	3	6	6	4	10
재산권	4	8	12	2	1	3	6	9	15
정보제공	20	53	73	1	9	10	21	62	83
정책건의	0	3	3	2		2	2	3	5
정서적지지	0	2	2		6	6		8	8
기타	2	4	6	4	1	5	6	5	11
합계	60	150	210	24	42	66	84	192	276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상담유형을 보면 생존권 4건, 소비자권리 3건, 신체자유 권리 3건 등이다. 생존권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였으며 소비자권리는 주로 행정접근상 불친절 사례가 많았으며 신체자유권리의 경우는 형사절차상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거나 폭력을 당한 경우가 주를 이루었다.

5) 상담의뢰의 본인 여부

<표 10> 상담의뢰자의 본인 여부

	2002		2003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본인	487	62.4	588	80.9	1075	71.3
가족	131	16.8	94	12.9	225	14.9
친척	10	1.3	15	2.1	25	1.7
대리인	72	9.2	31	4.3	103	6.8
합계	700	89.7	728	100.0	1428	
알 수 없음	80	10.3			80	5.3
합계	780	100.0	728	100.0	1508	100.0

본인 여부를 알 수 있는 상담은 588건으로 80.9%, 가족, 친척이 109건으로 15%를 차지했다. 2002년 상담의뢰자의 본인비중이 62.4%였던 것에 비해 80.9%로 상당히 높은 증가를 나타냈다. 이는 과거의 상담추이에 비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당사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높아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6) 나이

<표 11> 내담자의 연령 대

연령대	2002		2003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0~10세	14	1.8	8	1.1	22	1.5
11~20세	18	2.3	3	.4	21	1.4
21~30세	68	8.7	26	3.6	94	6.2
31~40세	116	14.9	20	2.8	136	9.0
41~50세	115	14.7	9	1.2	124	8.2
51~60세	63	8.1	16	2.2	79	5.2
61~70세	22	2.8	3	.4	25	1.7
71세 이상	2	.3	2	.3	4	.2
합계	418	53.6	87	22.0	505	33.5
알 수 없음	362	46.4	641	88.0	1003	66.5
합계	780	100.0	728	100.0	1508	100

<표 12> 내담자의 연령대와 상담유형

연령	노동권	여성장애인권리	생존권	건강권	교육권	문화향유권	접근권	정보접근권	지원서비스	소비자권리	형사상권리	시설장애인권리	가족권	신체자유권리	재산권	정보제공	정책건의	정서적지지	기타	합계	
																					빈도
0~10				1	4				1	1						1					8
11~20										1			1	1							3
21~30	1	1		1						3	1	2	2	1	4	11		1			28
31~40		1	2				1		3	1	1	3	2	1	4				1		20
41~50			1	1					1				1	1	2				1		9
51~60		2	3						2	1		2	1	1	5	2					19
61~70																2	1				3
71이상												1				1					2
총계	1	4	6	3	4			1	1	11	4	4	8	6	7	26	3	1	2		92

나이를 알 수 있는 상담은 총 87건으로 전체 상담중 22%를 차지하였는데 이중 20대 3.6%, 30대가 2.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2.30대가 많은 것은 일반적으로 사회활동이 활발한 연령층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상담유형별로 보면 10세 미만에서는 교육권, 20대에서는 재산권, 30대에서는 소비자권리가 주로 나타났다.

7) 상담유형

<표 13> 상담유형별 상담건수

상담유형	2002		2003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노동권	69	8.8	48	6.5	117	7.7
여성장애인권리	16	2.1	8	1.1	24	1.6
생존권	30	3.8	31	4.2	61	4.0
건강권	13	1.7	9	1.2	22	1.4
교육권	16	2.1	19	2.6	37	2.4
문화향유권	5	0.6	7	0.9	12	0.8
접근권	22	2.8	18	2.4	40	2.6
정보접근권	3	.4	11	1.5	14	0.9
지원서비스	52	6.7	23	3.1	75	4.9
참정권	1	0.1			1	0.1
소비자권리	69	8.8	62	8.4	131	8.6
형사상권리	10	1.3	24	3.2	34	2.2
시설장애인권리	14	1.8	10	1.4	24	1.6
가족권	31	4.0	37	5.0	68	4.5
신체자유권리	41	5.3	30	4.1	71	4.7
재산권	47	6.0	49	6.6	96	6.3
정보제공	286	36.7	306	41.4	592	38.9
정책건의	18	2.3	16	2.2	34	2.2
정서적지지	6	0.8	9	1.2	15	1.0
기타	31	4.0	23	3.1	54	3.6
합계	780	100.0	740	100.0	1520	100.0

전체적으로 인권침해로 접수된 상담이 386건으로 52.1%, 그 외 상담은 354건으로 47.9를 차지했다. 정보제공을 제외한 유형별 순위를 보면 소비자권리 8.4%, 재산권 6.6% 노동권 6.5%, 가족권 5.0%, 생존권 4.2%순으로 나타났다. 2002년에는 노동권과 소비자권리에서 각각 8.8%, 지원서비스 6.7%, 재산권 6.0%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분류에 있어 상황을 자세히 알 수

없거나, 순수하게 정보를 묻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되도록 인권침해 원인에 따라 상담을 분류하였으며, 그 외 장애유무와 상관없는 법률정보제공은 정보 제공중 법률정보제공으로 분류하였다. 상담유형별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2. 상담유형별 분석결과와 관련 사례

상담의 내용에 따라 대처과정은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게 된다.

크게 상담의 내용은 단순정보제공부터 법률적 측면에서의 자문이 필요한 법률상담, 사회적·제도적인 문제제기와 개선이 필요한 차별, 인권침해 등 다양하다. 단순정보제공의 문의는 장애등록이 가능한지, 장애등록 절차, 복지시책에 의한 할인혜택, 복지카드를 발급받아 처음 사용 시 방법 등이다. 시기적으로 복지시책이 변경되었을 때 같은 내용의 문의가 많다. 예를 들면 장애등록증이 LG복지카드로 바뀔 때 발급에 관한 내용의 문의가 많았고, 최근에 주차표지가 주차가능/불가능 표지로 변경시 불가능 표지를 받은 분들의 자격제한이나 이로 인한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이 많이 접수된다.

정보문의는 연구소에서 발간한 <생애주기별로 엮은 장애우정보집>을 중심으로 안내를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법률적 접근이 필요한 사례에 대해서는 인권센터의 법률위원들을 중심으로 법률적 자문을 구하거나 직접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하게 된다.

정보 제공이나 법률상담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모든 사례에 대하여 일주일에 한번씩 상담사례 회의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논의한다.

위에서 얘기한 대로 상담의 대처과정은 장애우정보집, 보건복지부 시책, 각 구청, 동사무소 등에 직접 확인하는 방법에서부터 노무사, 변호사 등에 의한 자문, 중재, 법적·제도적 제정이나 개정으로서만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연구모임과 공대위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활동으로 이어지는 경우 등 매우 다양하다.

1) 노동권

<표 14> 노동권의 침해

중분류	세부항목	빈도	유효 퍼센트
(1)노동기회차별 (14건, 29.2%)	1)취업기회제한	8	16.7
	2)면접시탈락	0	0
	3)모집공고제한	0	0
	4)부당해고	4	8.3
	5)직업훈련제한	0	0
	6)원서접수거부	0	0
	7)적절한시험환경부재	2	4.2
	8)기타	0	0
(2)노동환경차별 (21건, 41.8%)	9)적절한직무환경및업무배치차별	4	8.4
	10)다른동료에비해승진차별	0	0
	11)중도장애로복직연기	1	2.1
	12)장애로퇴직강요	5	10.4
	13)직장내인간관계에서차별	2	4.2
	14)다른동료에비해임금체불	8	16.7
	15)다른동료에비해저임금	0	0
	16)기타	1	2.1
(3)산재보상차별 (7건, 14.6%)	17)보상시장애인차별	1	2.1
	18)산재인정차별	5	10.4
	19)기타	1	2.1
(4)기타 (6건, 12.5%)	20)기타	6	12.5
합계		48	100.0

노동권에서의 상담은 48건이 접수되었으며 그중 노동환경차별이 21건, 41.8%를 차지했다. 세부항목을 보면 취업기회제한과 임금체불의 상담건수가 각각 8건이다. 장애인의 실업율은 28.4%로 전체실업률 4.2%에 비해 6.8배나 높은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 취업장애인의 취업 분야도 농업(24.6%), 단순노무직(23.4%), 서비스업(21.0%)에 편중되어 있다. 한마디로 열악하다.

상담내용은 일용직으로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을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정규적으로 일용직, 텔레마케터, 경비직 고용형태, 파출부 등으로 고용되어 고용이 불안정하고 제도적으로 보호가 어려운 열악한 구조에 놓여 있는 것이다.

2) 2000년 전국장애인실태조사(보건사회연구원)

인권센터 상담을 통해 분석한 장애인의 노동권은 애초 노동시장으로의 접근조차도 어렵고 설사 고용이 되었다 할지라도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기가 어렵다. 자본을 가진 자들은 장애에 대한 부정적 사회적 인식(무가치함, 비생산적, 시혜적 대상이라는 편견)을 이용하여 이를 악용해 장애를 가진 노동자를 부당해고하고 임금체불을 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보여진다.

또한 적절한 시험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직업을 가질 최소한 시도도 어려운 상황이다. 어렵게 직장생활을 시작해도 장애를 배려한다는 명목으로 한 차별이 발생하고 구조조정시 해고자 1순위가 된다.

노동권과 관련하여서는 무엇보다 부당함에 대한 인정과 문제해결욕구에 대한 지지가 기반이 되었을 때 해결이 가능하다. 노동권에 관련된 상담은 우선 법적 규정에 의한 근거 마련과 노동사무소에 직접적인 고발 및 진정, 해당 기관에 직접 개선을 요구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부당해고 상담을 진행하면서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했을 때 노동사무소 직원이 당사자에게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인권센터의 간사에게 일일이 확인하면서 개인의 결정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당사자의 결정을 직접 확인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당사자의 판단을 믿지 않는 태도였다. 노동자로서 당사자를 인식하는 태도가 아닌 우리 사회에서 자기결정권이 없는 사람 즉, 여성·장애인·나이어린 사람으로 무시하는 것으로 보여졌다. 그래서 장애를 가졌으니 잘 봐준다는 식이었다.

【취업기회제한】

직업소개소에서 청각장애라고 노가다 잡부일이 안된다고 한다. 청각·언어 장애인은 운동능력이 양호하고 노가다 경력이 있어서 괜찮은데...

나는 취업을 하고 싶으나 시각장애로 취업이 안된다. 학교 다닐 때 안마교육을 받았으나 안마사로도 취업하기 힘들다.

IMF이후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노동부에 계속 취업요청을 하였으나 6년간 취

업하지 못했다. 6년동안 공단과 노동부에 계속 취업 희망을 알렸고, 수십차례 방문했지만, 중장비기사로서의 일자리는 알선해 주지 않았다. 중장비 기사 자격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노동시장에서는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되지 않았다.

【부당해고】

청각장애2급입니다. 손가락(검지) 한 마디가 절단이 되는 산업재해를 당했다. 그 일로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

장애인이란 이유 하나로 사장이 장애인 직원을 비하하며 "해고하겠다"는 발언을 하고 이에 대한 항의도 무시하는 사업주에 의해 해고 위협을 받고 있다. 사장은 "다른 애들은 두 뭉, 세 뭉 일해야 하는 장애인은 '그렇지 못한다'고 해명했으나 그 역시 비하 발언이다.

재택근무로 통신망 관리 등을 하고 있다. 회사에서 임금을 더욱 적게 주려하고 부당해고를 하려 한다.

【적절한 시험환경부재】

시각장애를 가진 학생(특수교육 초등과정, 4학년)이 임용고시 시험시 시험환경을 요구하였는데(시험지 확대와 대필자) 이를 00교육청과 00교육청에서 거부하였다. 또한 이과정에서 00교육청에서는 "임용고시를 경남에서 치루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차피 시험을 봐도 신체검사규정에서 안된다"고 발언했다.

산업인력공단에서 주최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여 시험환경 때문에 CCTV라는 확대경 기능을 하는 보조기구를 이용해야 한다고 공단측에 연락하였더니 검토나 해본다는 태도였다.

【적절한 직무환경 및 업무배치차별】

같은 팀 상관으로부터 차별을 당한다. 업무배치를 갑자기 다른 사람으로 바꾸거나, 대놓고 무시하는 언행을 하는 등 참을 수가 없다. 그러나 조직적으로 어떻게 문제제기 해야될지 모르겠다.

【장애로퇴직강요】

000에 근무중인데 최근 회사사정상 0000과 통합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정리해고가 이루어지는데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해고

당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현재 대리로 대리직급의 경우 10%정도 해고될 것같은데 '장애를 가진 사람'을 인사상 차별하여 우선해고할 경우 등에 대한 법적 제재조치가 있는지 알고 회사에 이를 알려 사전에 해고가 될 가능성을 줄이고 싶다.

입사할 당시 사장이 3개월동안 80만원을, 그 이후로는 100만원을 약속하였다. 약속한대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이야기 했더니, 사장이 "어태까지 네가 한 게 뭐 있나", "다른 일 알아봐라...."라고 했다.

취업면접후 출근하라고 했으나 현장 담당자가 못마땅하다는 듯 우리 일과는 안맞다느니, 또 이런 일 할 수 있겠냐느니하고 했다.

【직장내인간관계에서 차별】

00장애인복지관에서 체육대회를 연습한다고 시각장애를 가진 직원만 남겨두고 모두 나가 연습하였다. 한달동안 모든 전화를 이 직원에게만 돌려놓고 무시했다.

청각과 언어장애가 있는데, 경기도에 있는 공장에서 숙식하면서 일했다. 그런데 일하면서 따돌림을 당했다.

【산재인정차별】

청각 4급 장애인이 철도청 조경공사중 호루라기로 위험신호를 하였는데 이 소리를 못들어 열차에 치어 뇌진탕으로 사망하였다.

2) 여성장애인권리

<표 15> 여성장애인권리의 침해

중분류	세부항목	빈도	유효 퍼센트
(5)모성권차별 (1건, 12.5%)	21)산전후조리차별	0	0
	22)장애이유로양육권침해	1	12.5
	23)낙태강요	0	0
	24)기타	0	0
(6)성차별(1건, 12.5%)	25)여성장애를이유로재산권침해	1	12.5
	26)여성장애를이유로교육기회침해	0	0
	27)여성장애를이유로노동기회침해	0	0
	28)기타	0	0
(7)폭력(3건,37.5%)	29)가정내성폭력	0	0
	30)성폭력	0	0
	31)가정폭력	3	37.5
	32)폭력	0	0
	33)기타	0	0
(8)기타(3건,37.5%)	34)기타	3	37.5
합계		8	100.0

여성장애인의 권리는 총 8건이 접수되었다. 폭력과 기타가 각각 3건, 37.5%를 차지했다. 측은함과 동정심에 의한 결혼, 상대방에 대한 의존적인 경향으로 가정폭력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거나, 본인이 직면하지 못하는 어려움으로 상담소에서 시댁에 전화해 줄 것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8건의 사례만 봤을 때 우리 사회에서 자주 거론하는 주체적이지 못한 여성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 수동적이고 의존적 성향이 보편적으로 여성적인 특성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잘못된 편견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고 당당하게 자신의 요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잠재적으로 상대방에게 의지하려는 마음과 이웃에 자신의 치부로서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 했던 청각장애여성은 상담과정에서 그러한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게 되었다. 상담후 자신의 결단과 이웃의 도움으로 가해자는 집으로 들어올 수 없게 되었다.

[가정폭력]

2개월간 동거했던 남자에 의해 폭력과 협박을 당하고 있다. 자신의 아들까지도 폭력을 당한다. 112에 신고해서 파출소에 갔는데 오히려 상해죄 26만원의 벌금이 나왔다.

[기타]

소개로 만난 남자가 집착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집 열쇠까지 복사하여 집에 들어와 지낸다.

3) 생존권

<표 16> 생존권의 침해

종분류	세부항목	빈도	유효 퍼센트
(9)생계유지권리차별 (23건,74.2%)	35)생활고(수급권탈락등)	18	58.1
	36)생계유지수단제한 (노점,가판대등)	5	16.1
	37)기타	0	0
(10)기타(8건, 25.8%)	38)기타	8	25.8
합계		31	100.0

생존권의 문제는 31건이 접수되었으며 생계유지권리차별이 23건, 74.2%를 차지했다.

장애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08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46.4%에 불과한 실정이고, 장애 가구중 생활보호대상자의 비율은 13.7%로서 비장애인가구의 생활보호대상자 비율 2.6%에 비해 5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은 월평균 157천원으로 가계에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으나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한해 월 6만원을 지급하고 있다³⁾(2003년 지방자치단체마다 지급수준이 조금씩 다름)

생활고와 병원비, 카드연체로 인한 신용불량자, 수급권 탈락문제, 가판대 신청문제와 노점상으로인한 과태료 부과문제이다. 수급자가 되지 않으면 기본적인 생활조차할 수 없는데,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 최소한의 생계비도 받지 못할 때 아무런 복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막막하기만 하다. 특히 밀린

3)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병원비로 인한 퇴원이나 매달 지불해야하는 병원비가 큰데도 자녀가 취직되어 수급권이 탈락될 때 안타깝기만 할 뿐이다.

당사자의 요구에 의해 동사무소에 직접 통화를 하여 문제상황을 확인하기만 할 뿐 실질적 개입이 어렵다.

[생활고]

00동사무소에 수급권 신청을 했으나 부모 재산이 있어서 안된다고 한다. 서류상으로만 확인하고 무조건 안된다는 것은 문제다. 가정방문을 통해 사는 형편을 보는게 아니고 앉아서만 하는 것은 문제다.

아들이 직업군인이 되어 수급자에서 탈락되었다. 5년전 이혼하여 양육권을 전부인이 가지기로 했는데, 호적이 아들이 올라 있다고 해서 어떻게 부양자가 될 수 있는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수급권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아무런 노동도 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부부, 어린 자식들이 기본적인 생활도 하지 못하고 있다. 가구의 특성은 전혀 고려해 주지 않고 있다.

교통사고에 의한 합병증과 후유증으로 삶의 환경이 열악하다.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도 못하고 있다.

한쪽다리가 없다. 노숙도 하고 그러는데, 너무 힘들다. 장애인 쉼터에 있다가 6개월후 나와서, 현재 서울과 지방을 다니고 있다. 현재 너무 힘들어 어디고 들어가고 싶다.

현재 충남쪽의 정신요양원 비슷한 곳에 있다. 정신장애를 이유로 이혼당했고, 일할 능력이 없다. 아버지는 안계시고 어머니는 67세가 넘어서서 도저히 부양할 수 없다.

[생계유지수단제한]

지하철 복권판매대를 운영하고 있다. 로또판매가 시작되고부터 복권판매 운영은 유지비도 나오지 않아 실제적으로 생활이 더 어렵다.

[기타]

“지하철공사에 가판대 배정신청을 하였으나 탈락되었다. 실제로 지하철에서 자

판거나 가판대에서 판매하는 사람을 보면 다 비장애인들이다. 장애인에게 신청을 하라고는 해놓고 비장애인들에게 배정하는 것이다. 배정 기준도 모른채 탈락되니 기분이 무척 나쁘다.”

“중증1,2급의 장애인 부부이며 수급자는 아니다. 그런데 아들이 올해 입대를 해야 한다. 집안의 애로사항이나 위기상황시 아들이 있어야 이동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떡해야 하나...”

시아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중 병원비가 없어 퇴원을 해야 한다.

결혼에 실패하여 마음도 상하고 자신감이 없어서 술을 많이 마셨다. 술병으로 입원을 하기도 했다. 카드빚이 많아 독촉을 받고 있으며 임대아파트가 압류되어 있다.

4) 건강권

<표 17> 건강권의 침해

중분류	세부항목	빈도	유효 퍼센트
(11)진료권차별 (3건, 33.3%)	39)진료계획참여및알권리침해 (의료사고중일부)	3	33.3
	40)건강에대한교육받을권리침해	0	0
	41)병의원진료거부	0	0
	42)서비스기관부재	0	0
	43)기타	0	0
(12)적절한치료권차별 (3건, 33.3%)	44)수술비필요	0	0
	45)진료비필요	0	0
	46)간병제도미비	0	0
	47)의료재활치료필요	1	11.1
	48)기타	2	22.2
(13)기타(3건,33.3%)	49)기타(의료사고등)	3	33.3
합계		9	100.0

건강권 침해는 9건이 접수되었으며, 진료권차별에서 진료계획참여및알권리 침해가 3건, 33.3%다. 실제로 의료사고에 의한 사례가 접수될 때는 다른 기관으로 연계한다. 의료사고의 문제는 의료 전문가의 개입 없이는 사실 확인

조차도 어렵기 때문에 접근조차도 안 되는 부분이다. 입증의 문제에 있어서 근거조차도 의료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의료사고 등 건강권 침해에 대응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진료계획참여 및 알권리침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식도기능이 안되고 신경이 다죽었다. 침이 역류하여 3년동안 드럼통 3통 분량의 침을 뱉고, 턱받이를 하고 앉아서 잠을 잔다. 병원에 가서 호소해도 정신병원에 가라고 한다.

【의료재활치료필요】

00의료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지만 진행이 더디다. 전문적 치료에 대한 조언과 개인교사나 도우미를 원한다.

【기타】

망막박리수술 후 ‘좋아질 거’라는 의사의 말에 수술을 했으나 보이지 않는다. 법적으로 제기하고 싶어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했으나 너무 전문적인 소송이라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하면서 소비자보호원으로 연계하였다. 그런데 소비자보호원에서는 병원과 3,40만원에 합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너무 억울하다.

군입대를 하려고 군신체검사를 받았는데, 클라인펠터증후군⁴⁾이라면서 군이 면제되었다. 본인이나 가족들은 모두 클라인펠터증후군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고, 어느 병원, 어느 과를 가야 하는지, 치료 방법이 있는지를 모르겠다.

4) 성염색체 형이 xxy, xxyy, xxxxy 등 여러 가지 이상 형태를 나타내어 외성기, 체격, 성징 등의 특징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증후군

5) 교육권

<표 18> 교육권에서의 침해

중분류	세부항목	빈도	유효퍼센트
(14)교육기회차별 (9건,47.4%)	50)취학기회박탈	3	15.8
	51)모집요강제한	0	0
	52)연령제한	0	0
	53)원서접수거부	0	0
	54)편입학거부	2	10.5
	55)교육기관부재	1	5.3
	56)진학거부및강요	1	5.3
	57)기타	2	10.5
(15)교육환경차별 (7건,36.9%)	58)편의시설미비	0	0
	59)학급내인간관계차별	0	0
	60)통합교육거부	2	10.5
	61)교육프로그램참여거부	1	5.3
	62)적절한시험환경부재	1	5.3
	63)학습도우미필요	2	10.5
	64)수화점역교재등필요	0	0
	65)교육비지원	0	0
(16)기타(3건,15.8%)	66)기타	1	5.3
	67)기타	3	15.8
합계		19	100.0

교육의 문제는 19건이 접수되었는데, 교육기회차별이 9건, 47.4%를 차지했다. 그 중 취학기회와 통합교육거부의 경우는 엄밀하게 따로 분류되지는 않았다. 주로 발생하는 문제는 장애를 중경증으로 나뉘어 명백하게 장애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장애가 '심하다'는 이유로 내치는 등 중증장애인을 차별하는 경우가 많다.

아태 장애인 10년 행동계획의 원칙중 교육의 내용을 보면 사회통합을 위한 절대적인 요소인 장애인의 교육과 관련하여 행동강령은 '통합교육'의 이념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통합교육에 대한 욕구는 당연한 권리라고 할 수 있음에도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나 교사에 의해 통합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사례를 살펴보면 여전히 장애가 심하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주간보호시설, 장애아동을 놀이방에서 거부하거나, 통합교육을 위하여 장애학생이 입학할

지라도 밥 먹을 때만 원반에 오고 체육이나 운동장에서 수업 할 때만 참여하기를 원한다.

또한 장애로 인한 문제행동 발생시 교사의 체벌 문제, 장애아동의 도우미 역할을 위하여 부모가 복도에서 대기할 것을 교사가 요구하기도 한다.

여전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교육권이 배제되는 이유는 '장애로 인한 이동의 어려움'이 다수를 차지한다. 다음의 사례는, 장애로 인한 교육차별의 전형을 보여준다.

시골에 사는 20대후반의 여성장애인이 어려서는 휠체어가 없거나 이동 환경이 마련되지 못해 교육기회를 박탈당하고 나이가 들어 학교를 가려고 하니 연령제한에 걸려 교육을 받을 수 없어 야학을 알아봐 달라고 요구함.

이는 가족들의 장애에 대한 이해 및 제도적 지원에 대한 정보접근이 거의 안 되었음을 보여준다. 교육시기를 훨씬 지난 지금에서야 교육제도교육을 받고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를 표현하지만 현실적으로 연령제한으로 공교육의 기회는 제한적이다. 개인의 욕구에 따른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와 함께, 교육적령기를 지난 장애학생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교육권의 문제에서 통합교육 거부나 입학거부 등은 먼저 특수교육진흥법에 근거한 내용들을 확인하되, 명백한 차별이나 인권침해임에도 법이 근거가 되지 못한다면 적극적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장하고 요구할 수 밖에 없다.

장애아동의 문제행동시 교사의 체벌 문제는 부모의 뚜렷한 입장이 서야할 것으로 보인다. 교사의 체벌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모의 판단이 있을 때 아동의 입장에서 교육적 차원에서의 체벌인지, 교사의 감정적 대응인지에 대한 수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인다.

【교육권 침해사례에 대한 대처상황】

일단 상담을 받게되면 문제상황에서 부모와 교사가 가능한 대화를 통해 문

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조언한다. 그래도 달라지지 않을 경우 교감이나 교장 등의 학교 책임자와 면담을 하거나 학교운영위원회와 함께 풀어가거나 교육청에 민원에 제기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아이의 과잉행동으로 인해 교사가 힘들어하는 상황이라면 교육환경의 열악한 조건까지 고려하여 보조교사까지도 요구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누구나 거주지와 가까운 학교에서의 교육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이 특수학교이든 특수학급이든.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하면 특수교육대상자 1인 이상이면 특수학급은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부모가 권리로서 요구하여 최소한의 교육환경이라도 마련될 수 있어야 한다.

장애를 이유로 한 입학거부의 문제에 있어서도 명백히 차별적 조치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부모가 강하게 항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는 게 필요하다.

시험환경이 제공되지 않는 문제에 있어서는 학교 측에서 장애학생을 대거 뽑아놓고 학습환경 및 시험환경을 등한시 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학생측에서 이에 대해 강력히 요구를 하여 학습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보다 활발하게 전개될 필요가 있다.

교사와 학교장, 교육청, 학부모가 원칙적으로 기본적 권리로서 교육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고 장애학생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교사와 학생들의 장애이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취학기회박탈】

지체1급 장애로 인해 어려서부터 집에만 있었으며 휠체어를 구입한지도 얼마 되지 않았다. 학교는 전혀 다니지 못했으며 초등과정은 검정고시로 마쳤는데, 중등과정부터는 도시로 나가 공부를 하고 싶다. 나이가 많은데 학교입학이 가능한지와 기숙사가 있는 학교로 입학하고 싶다.

단순히 제 아이가 수업에 방해가 된 것 뿐만 아니라, 제 아이의 행동과 말소리를 자기 아이들이 따라 하는게 싫으니 밥 먹을 때만 원반에 오고 체육이나 운동장에서 수업할 때만 참여하라고 한다.

00예술대학 실용음악과에 지원하였다. 필기시험은 없고 실기시험만 있는데, 실기시험 감독관이 “발음이 이상하다”고 했고 떨어졌다. 본인이 생각하기로 입학원서에 장애유무는 표시하지 않으나 특수학교인 00학교출신임은 표시되어 있으므로 학교측에서 특수학교출신이라고 생각해서 떨어뜨린 것 같다.

【교육기관부재】

청각장애인으로 포천에 거주하는데 수원 서광학교로 다녀야 한다. 거리가 너무 멀다.

【통합교육거부】

특수학교에서 비용도 많이 들고 아이의 발달이 늦어지고 해서 집근처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로 전학을 가고 싶다. 그런데 근처에 있는 00초등학교에는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교육청에 문의하니 특수학급 설치는 학교장 재량사항이라고 해서 학교장을 찾아가 보니 “공간이 부족하고 만약 교실이 여유가 있으면 음악교실이나 미술교실 등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특수학급 설치 계획이 없다”고 했다.

놀이방 원장이 “아이가 이용할 때 다른 엄마들이 애가 좀 이상하다고 했다”며 놀이방 이용을 거부했다.

【교육프로그램참여거부】

자폐경향이 있는 정신지체3급의 아이가 일반학교에 다닌다. 수련회에 가고 싶은데, 학교에서 무조건 못가게 한다.

【적절한시험환경부재】

양팔장애인으로 시험 볼 때 항상 대필자가 필요하다. 또한 대필자와 함께 시험 보려면 별개의 시험공간도 필요한데, 항상 적절한 장소가 제공되지 않았다. 과사무실이나 기자재실에서 시험을 보기도 했지만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 기자재실 한쪽에서 시험을 보는데 조교친구가 와서 같이 떠드는 것이었다. 하도 시끄러워서 조용히 해달라고 했더니 조교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갖잖네” 등의 언사를 하였다.

【학습도우미필요】

아이가 학교 화장실에 안경을 집어 놓고 옷을 집어넣는 등 말썽을 부려 특수

반에 있었다. 특수반에 있는 다른 아이를 꼬집자 선생님이 아이 볼을 꼬집어 부르터 있다. 선생님에게 왜 그러셨냐고 하니 꼬집을 수 밖에 없었다고 하며 고발하고 싶으면 고발하라고 문을 닫고 들어갔다.

[기타]

같은 반 장애아동이 동생의 입에 여러 개의 떡을 밀어 넣었고 씹어 먹을 줄 모르는 동생은 떡이 기도를 막아 숨을 못쉬게 되었다. 그렇게 기도가 막힌 채 몇 분여가 경과하였다. 흰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는 동생을 뒤늦게 발견한 교사들이 떡을 손으로 꺼내려고 시도했으나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나서야 119를 불렀다. 산소호흡기로 하루하루를 지탱하다가 결국 사망하였다.

일반 학급에 다니는 장애 아동을 위해 엄마가 수업중에 대기하면서 다음 시간을 준비해 주고 화장실에 데리고 다닌다. 아이의 책에 "지는 장애인 주제에"라는 낙서로 인해 누구 글씨같냐고 하면서 소란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교사가 "어머니 오늘은 도무지 기분이 나빠 같이 있을수가 없으니 집에 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휠체어를 밀어냈다.

주간보호센터에서 2년동안 생활해왔는데 장애가 심하다고 거부당하였다.

6)문화향유권

<표 19> 문화향유권에서의 침해

중분류	세부항목	빈도	유효퍼센트
(17)참여권차별(6건,85.7%)	68)참여제한	6	85.7
	69)문화공간편의시설미비	0	0
	70)문화비용필요	0	0
	71)기타	0	0
(18)기타(1건,14.3%)	72)기타	1	14.3
합계		7	100.0

문화향유권과 관련한 상담은 7건이 접수되었다. 그 중 참여권차별이 6건, 85.7%를 차지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문화생활을 즐기려는 경향은 더 높아진다. 또한 다양한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때 인간에 대한 상호이해의 폭은 더 넓어질 것이라고 본다.

장애가 없는 사람들만을 위한 문화공간이 바뀔 때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에 대해서도 숙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장애여부가 문제가 되지 않는 문화활동이 창조되었을 때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

여전히 편의시설의 미비에 의해, 혹은 장애를 이유로 거부당하기는 하지만 그 상황에서 바로 항의하고 요구되어야 한다.

안산시에 거주하는 지체장애5급의 시민이다. 개인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성포동에 위치한 성포도서관을 방문하여 장애인열람실을 이용하였다. 일반열람실은 3층에 위치하여, 계단 올라 다니기도 불편하여 1층에 위치한 장애인열람실을 이용하고자 하였다.(일반열람실은 자리도 비좁고, 산만하여) 첫날 장애인열람실을 이용하고자하여 성포도서관의 직원에게 문을 열러달라고 하였다.(항상 문을 잠궈 놓았다)직원이 하는 말이 휠체어를 타는 중증장애인만이 이용하는 시설이라하여 일반열람실을 이용하라고 하였다.

전화를 통해 부당함을 인정받고 당사자가 직접 안산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도서관장의 사과를 받고 이용할 수 있었다.

【참여제한】

특수학급에 재학중인 자폐, 발달장애아동을 시예산의 수영장에서 이용을 거부하였다.

수영장에서 등록을 거부하였다. 수영할 때 속도를 못낸다고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이다.

00일보사 신춘문에 시부문에 응시하려고 하는데, 자필로만 발송하라고 한다. 대필자나 봉사자가 없으면 접수도 안된다.

안산의 도서관에서 휠체어를 타는 중증장애인만이 이용하는 시설이라하여 1층에 위치한 장애인열람실 이용을 못하게 하였다.

복지관의 인라인스케이트 프로그램 참여신청을 했는데, 꺼려했다. 참여자 기준을 요구했으나 제시해 주지 않았다.

7) 접근권

<표 20> 접근권에서의 침해

중분류	세부항목	빈도	유효퍼센트
(19)이동권차별 (10건,55.6%)	73)교통시설제한	0	0
	74)도로환경제한	1	5.6
	75)편의시설미비	3	16.7
	76)안내표지판및방송등미비	2	11.1
	77)기타	4	22.2
(20)건축물접근권차별 (6건,33.4%)	78)건축물편의시설미비	2	11.1
	79)주차제한	3	16.7
	80)기타	1	5.6
(21)거주이주권차별 (1건,5.6%)	81)지역주민거부	0	0
	82)거주이주권침해	0	0
	83)기타	1	5.6
(22)기타(1건,5.6%)	84)기타	1	5.6
합계		18	100.0

접근권의 문제는 18건이 접수되었는데, 여전히 55.6%가 이동권의 차별의 나타났다. 어느 외국인이 한국은 장애인이 없는 나라라고 말했다고 한다. 방송중 일부 내용을 듣고서 생각해 보니 거리에서 장애인을 한 번도 본적이 없었다는 생각을 했고 정말 한국에는 장애인이 없구나 했다고 한다. 최소한의 이동조차도 보장되지 못해 거리로 나설 수 없는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하여서는 이동권연대의 중증장애 회원들이 선로 점거 투쟁 등 지난한 투쟁에 의해 지하도의 엘리베이터 설치, 저상버스 도입 등이 이루어지고 휠체어로 이동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된 것이다. 이제는 가시적인 이동권의 보장 뿐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이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공간에서 접근이 가능한 구조가 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 실제로 영구임대아파트가 휠체어 이용이 전혀 불가능할 만큼 장애에 대한 배려가 없는 주거지라고 한다. 소형 평수로 인하여 거주지내에서조차도 휠체어 이용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 확보도 어려운 것이다. 점차로 우리 주변의 모든 구조물이 접근이 가능한 구조로 개조되어야 한다.

일상에서 세밀하게 장애로 인한 불편함과 접근이 어려운 구조에 대한 의

식적인 점검과 장애 당사자의 다양한 요구가 필요하다.

【도로환경제한】

자신의 여동생은 시각장애인인데 인도에 올라와 있는 차에 부딪혔다. 차주는 주차된 곳이 '사유지'라서 괜찮다. 왜 집에 있지 돌아다니느냐' 등의 말을 했다.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112에 신고 했고, 경찰은 당신의 장애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말했다.

【편의시설미비】

선릉역과 왕십리역은 리프트가 없다. 아이맥스 영화관은 휠체어가 들어갈 공간이 없었다.

【안내표지판및방송등미비】

시각장애인으로 지하철 안내방송이 들리지 않아서 지나치기도 한다. 엔진 소음에 묻혀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지하철 이용시 안내방송이 유명무실하다. 동대문운동장역 선로에 떨어졌다. 차가 들어왔는 줄 알고 케인을 내밀어 확인하다가 남편이 떨어지고 손을 잡고 있던 부인도 중심을 잃어 떨어졌다.

【건축물편의시설미비】

수학여행중 숙박시설의 화장실에서 넘어져 이 두 개의 신경과 뿌리를 다쳤다. 김포공항을 이용하는데 식당가중 4층은 엘리베이터가 없고, 에스컬레이터에는 진입방지 봉이 있어 휠체어를 타는 나는 이용할 수가 없다. 장애인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 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어 하루종일 누워 있어야 한다. 다행히 화장실은 휠체어가 들어가지만, 화장실이 좁아 목욕 등은 불가능해서 머리를 감거나 목욕할 때는 방에서 물을 받아놓고 해야 되는 상황이다.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기 친구는 화장실에 휠체어가 들어가지 않아 방에서 대소변을 받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주차제한】

진안군 마이산 벚꽃주차장 남부 주차장중 장애인전용주차장에 대형 천막을 설치해 주차를 못했다. 주차장 관리인으로 매번 장애인전용주차장에 비장애 차량이 주차하기에 만류하지만 자신을 무시한다. 아파트 주차장에 장애인주차장이라고 마크만 있고, 크기는 일반주차장과 같아서 내릴 수가 없다.

[기타]

스쿠터를 타고 이동중 교통사고가 났다. 경찰서에서는 무조건 면허증을 가져오라며 무면허운전으로 몰고 있다.

8) 정보접근권

<표 21> 정보접근권에서의 침해

중분류	세부항목	빈도	유효 퍼센트
(23)정보기본권차별 (3건,27.3%)	85)자기정보통제권(프라이버시, 반감시권,주민번호유출등)	3	27.3
	86)정보공유권리(저작권,특허권,전자도서관등의정보제한등)	0	0
	87)정보접근차별(총체적인 알권리등)	0	0
	88)기타	0	0
(24)정보매체접근차별 (5건,45.5%)	91)수화및자막서비스제한	0	0
	92)점자및음성서비스제한	3	27.3
	93)컴퓨터이용권제한	1	9.1
	94)상징적그림서비스제한	0	0
	95)기타	1	9.1
(25)기타(3건,27.3%)	96)기타	3	27.3
합계		11	100.0

정보접근권의 문제는 11건으로 나타난다. 자기 정보 통제권의 문제는 장애인에 대한 시혜적인 방송태도로 인해 시설에서 목욕하는 알몸을 방송하는 문제에 대해 제기된 문제들이다. 당사자보다는 그 방송을 봤었던 다른 장애인들, 단체 등에서 지적하고 있다. 최소한 자기신체를 노출하는 것은 본인의 허락하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타인의 목적을 위해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시각장애에 있어서 텔레뱅킹 안내나 CD기 사용시 접근이 어렵다. 은행에서는 CD 사용을 권장하고 있음에도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소비자로서의 편의를 제공할 최소한의 배려도 없다고 할 수 있다.

[기타]

사랑의리퀘스트나 사회복지시설을 방송중 목욕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어떤 사람이라도 알몸을 찍는다는 건 싫어한다.

[점자 및 음성서비스제한]

국민은행 텔레뱅킹의 보안카드를 이용할 수 없다. 은행에 문의하니 점자카드를 만든다고 하나 점자를 읽을 수 없다. 텔레뱅킹 안내가 하도 빨라서 읽기 전에 다음 메뉴로 넘어가 버린다.

9) 지원서비스

<표 22> 지원서비스에서의 침해

중분류	세부항목	빈도	유효 퍼센트
(26)비용지원차별 (9건,39%)	97)이동비용지원필요	1	4.3
	98)양육비용지원필요	0	0
	99)의료비용지원필요	1	4.3
	100)용자지원필요	5	21.7
	101)기타(주택개조비 등)	2	8.7
(27)도우미지원차별 (1건,4.3%)	102)심리상담필요	0	0
	103)이동도우미필요	0	0
	104)가정도우미필요	0	0
	105)수화점역등필요	0	0
	106)기타	1	4.3
(28)보장구사용권차별 (3건,13.0%)	107)보장구구매및수리비용필요	2	8.7
	108)보장구품목제한 (전동휠체어보장구x)	1	4.3
	109)기타	0	0
(29)기타(10건,43.5%)	110)기타	10	43.5
합계		23	100.0

지원서비스의 문제는 23건으로 비용 지원이 필요함이 높다. 공장운영에 대한 운영자금, 창업자금, 전세금, 전동휠체어 지원 원함, 5년에 한번 지원하는 보청기의 문제점, 장애유형에 맞는 전반적인 정보를 알기를 원한다.

생활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생활비, 전세자금 등을 요구하는데, 복지부시책에 의한 자립자금 대여나 저소득 장애인 가구 전세자금 지원 등 시책에 의한 대상조건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지원서비스를 요구하는 상담과정에서 복지부시책을 중심으로 안내를 하고 있으며, 동사무소에서 제대로 안내되지 않은 정보에 대하여 직접 해당 동사

무소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기도 한다.

【이동비용지원필요】

도로공사 담당자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2000cc 이상 배기량은 고급 승용차이며 여유있는 장애인이 타는게 아니냐는 말을 하여 그럼 혜택을 받은 장애인이 도둑놈이나 하면서 싸우기도 하였다. 장애인은 보장용으로 큰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다.

【용자지원필요】

고용촉진공단에서 창업자금을 받으려고 했는데, 조건이 까다로워서 받지를 못했다.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무보증 조건에 대해 문의한 뒤 해당 조건이 무리하다며 항의했다.

【기타】

장애인전화 상담건수가 중요한게 아니다. 정보가 미흡하다. 공인증개사 시험준비중인데 장애인전화에 전화하면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한다. 알아봐 달라고 하면 알아봐 주어야 한다.

만5세의 정서 및 자폐성향이 있는 아이의 어머니이다. 장애관련한 정보를 얻고 싶다. 다른 엄마들과도 정보를 교환하기는 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기가 어렵다.

10) 소비자권리

<표 23> 소비자권리에서의 침해

중분류	세부항목	빈도	유효 퍼센트
(33)보험금융사용권차별 (14건,22.5%)	117)보험가입제한	3	4.8
	118)보상금제한	11	17.7
	119)기타	0	0
(34)구매권차별 (8건,12.9%)	120)음식점등서비스기관출입제한	1	1.6
	121)구매제한	0	0
	122)불친절및무시	5	8.1
	123)기타	2	3.2
(35)행정접근권차별 (16건,25.9%)	124)행정접근제한(불친절,무시, 정보미제공으로인한 피해)	12	19.4
	125)기타	4	6.5
(36)기타(24건,38.7%)	126)기타	24	38.7
합계		62	100.0

소비자권리는 62건으로 상담유형중 가장 많이 접수되며, 보험금융사용권차별은 14건, 구매권차별은 8건, 행정접근권차별은 16건, 기타가 24건이 차지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신용카드 연체시 독촉당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부당함, 식당에서의 거부, 지하철역 매표소 직원의 불친절함, 교통사고시 보상금 문제, 영구임대아파트 당첨후 취소되는 과정에서의 부당함, 스쿠터 사고시 보상문제, 장애를 이유로 시신기증 거부, 직업학교 순회 차량이 휠체어를 탄다고 귀찮아함, 3륜 오토바이 운전중 사고, 보상해주지 않고 무면허라며 협박을 당하는 문제가 있었다.

보험가입제한 차별 문제에 있어서는 가입거부된 당사자가 보험가입 거부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하여 승소로 이어지는 결과가 나왔다. 법적 소송을 통해 장애차별로 인정된 큰 성과였다.

행정접근차별은 동사무소, 도서관, 등에서 겪는 불친절, 무시로 인해 느꼈던 부당함의 문제로 인해 일상적 차별속에 살아가는 장애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언어나 명시적 표현에 의한 차별일 경우 문제 제기시 명확하게 차별이었음을 확신할 수 있지만 눈빛과 분위기로 감지되는 무시에 있어서는 문제상황을 해결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

【보험가입제한】

장애청소년과 함께 여행을 가기 위해 보험사에 문의했더니 거부하였다.

삼성화재의 화재보험을 가입하려고 했으나 교사나 국가공무원이 아니라고 교묘하게 거부하였다.

【보상금제한】

3륜 오토바이 운전중 사고가 났다. 면허증이 없다고 불법이라 보상이 안된다고 한다.

어린이사랑보험을 생후 18개월에 가입하였다. 이후 정신지체 1급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9세이다. 보험약관중 '특수교육비'가 있으니 달라고 하였더니, 정신지체 장애는 안된다고 하였다.

교통사고 후 휠체어를 타게 되었는데,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휠체어 비용으로 90만원이 나왔다. 이는 3년에 1회씩 휠체어를 교환해서 3번 교환할 비용이 산출된 가격이다.

종신건강보험에 가입했는데 정신지체장애가 선천적이라며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음식점등서비스기관출입제한】

식당주인아저씨가 바쁜 시간이라고 나가라고, 한산할 때 오라고 하면서 거부하였다.

【불친절및무시】

눈썰매장 입장시 '썰매를 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강요한다.

강남역매표소에서 3급인데 왜 두 장이 필요하나, 카드를 제시해라, 똑바로 주라고 하면서 반말을 하였다.

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 30분전에 연락했더니 10분전에 전화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더니 택시가 없다고 한다.

【행정접근제한】

장애인임대아파트 신청을 5번 했다가 떨어졌다가, 6번째 신청해서 배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몇 일후 취소되었다고 한다. 일반 장애인 80가구중 20가구가 유공자 장애인분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철거과정에서 경찰에게 폭행을 당했다. 그 과정에서 "늙은 년, 독한 년"이라는 욕을 하고, 중간에 구급차에서 내리려고 하니까 머리채를 잡아 끌어 오렸다.

작년 8월 114통화에 대한 요금이 청구되어 00한국통신에 전화했는데 장애인은 114면제라고 했더니 들어본 적도 없다며 다른 데 가서 그런 소리 하지도 말라며 싸부쳤다.

법률구조공단, 경찰서, 가정폭력상담소에 상담을 위해 전화를 했는데 "옆 사람을 바꿔라", "다른 곳에 전화해라", 무조건 "못알아듣는다" 거나 끊어버린다. 또한 짜증스럽게 얘기하거나 나이를 물어보면서 "왜 우냐고, 나이를 그렇게 먹었는데 왜 우냐고?" 한다.

【기타】

연체 독촉과정에서 전동휠체어를 차압하겠다고 한다.

롯데월드 놀이기구를 이용하기 위해 놀이기구 보조인에게 장애인복지카드를 보여 주면서 앞이 전혀 안보이니 봐달라고 부탁하였다. 하차후 내려가라고 해서 발을 내딛었다가 계단으로 굴러 앞니가 완전히 나갔다. 롯데월드에서는 전혀 잘못이 없다고 한다.

독촉장이 날라와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한다. 형사처벌될까봐 걱정이다.

평소에 시신기증의 뜻을 두고 이대 목동병원에서 장례를 치루면서 시신기증 의사를 병원측에 밝혔더니 시신기증을 거부하였으며, 거부하면서 "장례비 200만원"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는 말까지 하여 몹시 불쾌하였다.

000학교 등하원을 학교의 특장차로 하고 있다. 이 차를 총무가 운행하는데 비오는 날은 아예 묻지도 않고 오지 않았고, 어떤 때는 나에게 전화해서 "못나가겠다. 그러니 너도 집에서쉬어라"고 했다. 그래서 항의했더니, "너는 내려서 도와줘야 하지만, 다른 사람은 혼자 탄다"고 말했다.

11)형사상권리

<표 24> 형사상권리에서의 침해

중분류	세부항목	빈도	유효 퍼센트
(37)법절차위반 (6건,25.0%)	127)불법체포	0	0
	128)자백강요	3	12.5
	129)기타	3	12.5
(38)피해자로서권리침해 (8건,33.3%)	130)의사소통제한으로수사미진	2	8.3
	131)진술의신빙성불인정	1	4.2
	132)기타	5	20.8
(39)기타(10건,41.7%)	133)기타(가해자권리침해 등)	10	41.7
합계		24	100.0

형사상의 권리는 24건으로, 신체자유의 권리 영역과 비슷한 내용이 많아 신체자유의 권리 30건과 비교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형사상권리에 있어서 정신적 장애인에게 자백강요, 여죄추궁, 공범으로 오인되거나 주범으로 몰림 등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문제이며, 이 과정에서 경찰, 검찰 등의 장애에 대한 몰인식, 위압적 태도, 강압 등이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시·청각 장애인의 의사소통제한으로 인해 조서작성시 확인불가능, 적절한 수화통역의 부재 등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의 개정과 경찰, 검찰, 재판관 등의 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이 필요하다.

또한 경찰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가해자를 비호하거나 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경찰에 대한 불신을 호소한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수사과정이 진행되지 않는 문제에 대하여 단체에서 나서주기를 요구한다. 단체에서 경찰을 고발하거나 장애인을 이해하는 변호사 선임을 요구한다.

[자백강요]

아들이 동네의 000의 꾀임으로 가출하였는데, 가출해서는 000이 주도한 성폭행사건에 연루되어 공범으로 처리되고 있다. 아들의 말을 들으면 바깥에서 망만 봤고, 피해자도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는데 똑같이 처벌되는 것은 억울하다. 게다가 아들은 평소 의사표현도 제대로 못한다.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서류를 찾으러 차에 탔는데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해 음주운전이라고 했다. 경찰서에 가서는 술을 많이 마셔서 정신이 없고, 강압적으로 이야기해서 무서웠고 반말로(손이 없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어떻게 댄니? 저런 사람을 왜 잡아왔니? 지장이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도 없겠네...” 등의 말을 했다. 어쨌든 계속 싸인을 하라 했고 보지도 않고 싸인을 해주었다.

[기타]

개인적으로 경찰을 믿기 어렵다. 교통사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인정했던 경험이 있다.

시각장애1급여성인 정씨는(25세) 지역에서 혼자 살고 있다. 시각장애로 인해 주변으로부터 무시와 희롱을 자주 당해오던 정씨는 지난 2003년 8월 80대 노인으로부터 지팡이로 찌르고 엉덩이를 맞는 등의 추행을 당해왔다. 이에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은 정씨가 이전에 2차례의 ‘성희롱’신고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신고를 무시하고 임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이 과정에서 정씨에게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아느냐? 저 할아버지가 아가씨 엉덩이를 만졌겠느냐?”며 피해자의 장애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

매우 화가난 정씨는 인권센터로 상담을 의뢰했다. 인권센터는 사실을 확인한 후 송파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다. 송파경찰서는 청문감사를 통해 해당 경찰관과 지구대책임자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리고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대해 ‘장애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해당 경찰관은 ‘자신으로 인해 실시된 장애인권교육에 참석도 하지 않은채 현재 자신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청’을 제기한 상태다.

경찰서에 가서 진술하는 과정에서도 시각장애라고 고압적인 자세였다. 장애를 이해하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다.

담당형사가 아무 얘기도 없이 가해자와 처리한 것에 대해 억울하고 화가 난다.

집단폭행을 당해 파출소에 신고했을 때 제대로 접수를 안받았다. 오히려 장시간 서있게 만들고 뒤로 돌아 옆으로 돌아 시키고 욕을 하였다.

피해자로 파출소에 갔는데 순경들이 에워싸고 위압적인 상황이었다.

송파경찰서로 연행되어 유치장내에서는 경찰들의 친절함 도움이 있었으나, 유

치장내 화장실 등 기본적인 시설이 되어있지 못해 고생하였고, 형사들이 이야기만 잘 하면 금방 보내주겠다,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하면 하루 더 연장될 뿐 별로 소득이 없으니 하지마라 등 불리한 이야기를 했다. 이에 영장실질심사없이 성동구치소로 넘어갔고, 성동구치소내 아무런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이 되지 못했다.

12) 시설장애인권리

<표 25> 형사상권리에서의 침해

중분류	세부항목	빈도	유효퍼센트
(40)사생활권차별 (3건,30.0%)	134)자기결정권침해	3	30.0
	135)사생활권리침해	0	0
	136)기타	0	0
(41)폭력 (2건,20.0%)	137)심리및언어폭력	0	0
	138)폭력	2	20.0
	139)성폭력	0	0
(42)적절한서비스수익차별 (0건,0.0%)	140)기타	0	0
	141)적절한서비스받을권리침해	0	0
	142)기타	0	0
(43)거주이주권차별 (1건,10.0%)	143)거주이주권리침해	0	0
	144)기타	1	10.0
(44)기타(4건,40.%)	145)기타	4	40.0
합계		10	100.0

시설장애인의 권리침해는 10건으로, 시설 운영자들에 의한 자기결정권침해(3건)문제와 폭력(2건)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사회와 격리된 시설의 담장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소한의 권리도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신체적 약자요, 가족에 의해 버려진 사람들이요, 스스로 신변처리도 어려운 사람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요구하고 주장하기는 매우 어렵다. 더욱이 외부와 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가운데 시설의 운영자가 종교적 신심과 사명감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있다 고 한다면 생활자의 기본적인 권리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공동생활에서 생활했던 정신지체 남녀의 결혼으로 불거진 출산이라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염색체 검사와 불임수술 등에 대한 대책을 운영진들이 논의한다. 법적으로 책임지는 문제가 발생할까봐 염색체 검사나 불임수술 강요가 법적으로 인권침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한다. 정신지체인의 일상에 대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에 있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스스로를 보호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쉽게 이루어지는 문제가 신체적 폭력이다. 맞았다는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이 없다고 한다. 실제로 어떤 시설에서는 딸이 자신의 옆구리를 찔렀다고 원장이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호수를 얼굴에 대고 물을 뿌려대기도 한다. 폭력이 쉽게 자행되는 것은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쉽게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시설문제에 있어서는 주요 사례 발표시에 자세히 다룰 것이다.

【자기결정권】

공동생활가정에서 정신지체 남성과 여성이 결혼날짜를 잡았다. 결혼전에 성교육, 건강검진, 염색체를 검사해야 된다고 주변에서 말한다. 검사후 결과에 따라 불임수술이나 피임법 지도를 해야 된다고 한다.

【폭력】

미신고조건부시설 그룹홈에서 아이 중 하나가 코뼈가 부러졌다. 그룹홈에서는 자신이 다치거나 다른 아이가 때려서 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의심스럽다. 또한 평소 아이들을 막대하는 것을 다른 부모도 목격했다. 학교 교사의 증언에 의하면 아이들이 준비물도 제대로 챙겨오지 못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오는 등 제대로 보호해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수의를 입히는 과정에서 어깨 우측에 화상이 있고 껍질이 벗겨진 참혹한 상처를 발견하였다.

000(조건부신고시설)에서 엄마가 있는데도 화장실에 가두고 구타하였다. 산만해져서 사람들을 때린다는 이유였다.

기도원에 본인 의사없이 일방적으로 입소되었다. 129에 의해 폭력속에 강제로 끌려간 것이다. 프로그램은 없고 하루일과는 6시에 예배로 시작하여 식사, 찬송, 식사, 찬송, 5시 식사, 점호로 이루어진다. 떠드는 사람이 있으면 약을 먹인다. 안수기도 중 손가락으로 눈을 찌른다.

【기타】

직업이 없는 나머지 5인의 식구와 새로 구입한 집을 중심으로 '공동생활가정'으로 등록하고자 하였으나 시에서 직업이 없어 공동생활가정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하며 생활시설로 신고하려고 해도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000(시설)에서는 상처를 발견 후에는 장례비용을 지급한다고 하였으나 검찰에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되니까 국가에서 지급하는 50만원과 형의 소득금액 60여만원만 지급한다고 한다.

13) 가족권

<표 26> 가족권에서의 차별실태

중분류	세부항목	빈도	유효퍼센트
(45)결혼할권리차별 (1건,2.7%)	146)장애이유로결혼반대	0	0
	147)결혼제한	1	2.7
	148)기타	0	0
(46)가족생활권차별 (33건,89.1%)	149)자기결정권침해	12	32.4
	150)가정폭력	0	0
	151)가정내성폭력	0	0
	152)장애로이혼별거	4	10.8
	153)가족임의시설입소추진 (본인의사외시설입소)	13	35.1
	154)장애자녀출산으로이혼	0	0
(47)기타(3건,8.1%)	155)기타	4	10.8
	156)기타	3	8.1
합계		37	100.0

가족권은 37건이 접수되었으며, 가족생활권차별이 33건, 89.1%를 차지했다. 가족 임의에 의한 시설입소 상담건수가 13건, 35.1%로 가장 높다.

장애로 인하여 가족내에서 조차 독립된 인간으로 인정되기 보다는 불완전한 존재로서 인식된다. 개인의 문제에 있어서 가족이든, 주변 사람이든 개인의 결정권이 존중되지 않는다면 누구도 쉽게 '관계'를 맺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가족에 의해서 자신의 결정이 인정되거나 존중되지 않는다면 감정적으로 고립감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 고립감이 사회적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본인이 원하는 결혼 상대방에 대하여 부모가 "멀쩡한 여자가 너같은 중증장애인과 왜 결혼하겠느냐"면서 결혼을 반대하거나 독립적으로 살아보겠다는 의지를 무시한다.

또한 가정내 보호가 불가능한 경우 시설 입소를 추진하는 사례가 많다. 부

모가 일하거나 병으로 입원할 경우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 방안도 없기 때문에 가족들은 쉬운 방법으로 입소시설을 생각해 볼 수 밖에 없다.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모든 문제가 가정의 책임, 부모의 책임으로 인정될 때 가정내 보호가 어려운 경우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다. 쉬운 결정일 수는 없으나 시설입소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 일상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생활시설 외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결혼제한】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는 멀쩡한 여자가 뒷하러 중증장애인에게 와서 고생을 하려는 것이나면서 재산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고 한다.

【자기결정권침해】

병원비가 부담스럽다는 이유 등으로 오빠가 본인 모르게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하고 장애인등록을 받았다.

기초생활비조차 형이 통장에서 찾아서 써 버리고 생활비는 전혀 주지 않아 동네 사람들이 불쌍한 마음에 이 모자의 식사를 해결해 주고 있다. 확인할 길은 없지만 학생의 말로는 학생의 복지카드조차 형이 서울에 가져갔다고 하니 도용하고 있지 않을까 짐작된다.

현재 독립해서 수급자로 살고 있는데 어머니가 강제적으로 집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장모가 늘 빗에 쫓기며 살면서 딸을 이용하려고만 한다. 딸에게 강제유산을 시키기도 하였다. 아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계비를 자신이 쓰려고 이혼시키려 한다.

아들이 건강악화로 쉬고 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장애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강하게 대해야 된다고 하면서 심하게 대한다. 억지주장을 하면서 확대하고 주눅 들게 하여 내쫓았다.

교통사고 보상금 때문에 처형을 금치산자로 등록하려고 한다.

【장애로이혼별거】

결혼3년만에 이혼을 강요당했다.

【가족임의시설입소추진】

동서들이 경기도 광주에 있는 은혜동산이라는 시설에 강제입소시키려 한다. 본인인 거부하고 있으며, 동서들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40세의 딸이 걷지도, 서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가리지 못한다. 자신은 암환자로 병원에 장기간 입원해야 하는데, 옆에 사람들이 시설로 보내는 게 더 좋다고 한다. 유료 시설이라도 보내면 딸에게 더 좋을 것 같다.

기형아를 출산하여 아기를 입양시키려고 한다.

아이의 엄마가 항암치료중 사망하여 아이를 돌 볼 사람이 없다. 아버지와 형 하나가 있지만 아버지는 일을 하러 다닌다.

이혼하여 혼자서 두 딸을 키우고 있다. 큰 딸이 의사소통이나 신변처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 꼭 사람이 붙어 있어야 된다.

시설에 입소하여 말할 상대가 있으면 언니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출산한지 2주된 아기가 다운증후군이다. 산모가 애를 키울 용기가 없다고 한다. 친권 포기를 원한다.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아이는 심장문제와 호흡이 어려워 입원했다가 다운증후군 검사를 받게 되었다. 젊은 부부로 감당할 용기가 없다고 한다.

고혈압 수술을 하고 5년동안 누워만 있다. 호수로 음식을 섭취하고 의식은 없이 눈만 떠 있다. 동생이 일을 하면서 두 자녀를 키우고 있다. 의사가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다고 했다.

부모가 이혼하였다. 10살 때 심한 열병을 앓아 정신지체가 되었다. 입소시설을 알고 싶다.

17년동안 엄마가 뒷바라지로 고통스러워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한 지 2주가 되었다. 아이도 엄마 입원후 영양실조와 탈수 등으로 입원하게 되었다. 엄마가 퇴원한다고 해도 돌보기 어려울 것 같다.

부모 사망후 큰오빠가 정신지체 동생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기타】

사고로 인한 장애가 생기자 아내는 자신이 돈을 번다고 나를 부양하지 않고 자신이 벌어서 자신만 쓴다.

시설, 학교 다 가봤지만 애가 적응을 못한다. 아이가 제대로 보호되고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들의 자위행위를 엄마가 도와준다. 의사에게 상담하였더니 여자성기를 끼고 할 수 있도록 기구를 사주라고 하는데 처가 반대한다.

장애가 생기고부터 부인에게서 무관심, 무시, 외면당하고 있다.

여동생이 지금 임시로 시설에서 생활한다. 앞으로를 위해 한정치산 신청을 하려고 한다.

14) 신체자유권리

<표 27> 신체자유권리의 권리 침해

중분류	세부항목	빈도	유효퍼센트
(48)폭력 (29건,96.6%)	157)심리및언어폭력	10	33.3
	158)폭력	17	56.7
	159)성폭력	1	3.3
	160)누명	0	0
	161)기타	1	3.3
(49)기타(1건,3.3%)	162)기타	1	3.3
합계		30	100.0

신체자유권리의 권리는 30건인데, 형사상권리와 같이 봐야 할 것이다.

폭력이라함은 신체적, 심리적, 언어적 폭력을 모두 포함한다. 장애로 인하여 신체적 폭력상황에도 쉽게 노출되고 또한 심리적, 언어적 폭력도 더 빈번하다.

접수된 사례들을 면밀히 보면 문제 상황과 별개의 문제인 노골적인 장애비하 표현으로 장애 당사자의 감정을 자극하여, 싸움의 문제보다 장애를 무시·비하하는 태도에 상처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신체자유권리로 분류된 사례

들을 보면 수사과정까지 가는 법적 해결을 요구하는 문제들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소에 전화하게 되는 것은 장애를 무시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한 울분인 경우가 많아서이다. 또한 일반적인 과정에서나 경찰의 태도에서의 문제로 인해 장애를 이해하는 변호사나 장애를 이해하는 법적 접근방법으로의 접근을 요구하는 것이다.

한편 신체적 폭력보다 더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것은 언론의 보도 방식이다.

대구지하철 사고 보도과정에서 '용의자의 장애와 관련하여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아무런 검증절차 없이 보도'하고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장애를 지나치게 부각'하였다. 보도과정에서 오히려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해 혹독한 편견을 드러내어 우리사회의 인권감수성을 떨어뜨리고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인권센터에서 언론의 보도방식에 대한 문제로 인해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심리및언어폭력】

대구 사건보도시 장애인, 정신지체 등의 용어를 함부로 쓰면서 전체 장애인에 대하여 나쁘게 인식케 한다. 지체 2급이라고 하는데, 본인도 지체2급이며 대구 사건과 같은 일을 저지를 의도는 전혀 없으나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케 한다.

이전부터 알고 지내는 친구로부터 3일전 핸드폰 문자로 "병신은 땅 넓을 때 죽으라는 어르신 말씀" 이라는 내용의 메일을 받았다.

주인아주머니가 장사가 안되는 걸 장애가 있는 아르바이트생 탓으로 다 돌린다.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은 손님들도 잘 데리고 오는데 너는 그런 것도 없�면서 갖은 면박과 구박을 가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다. 때로는 IQ가 몇이나 하면서 학교 다닐 때 꼴등하지 않았냐며, 갖은 소리를 다한다.

KBS 1라디오 "강지원입니다(6시50분 뉴스)"에서 다른 내용없이 "정신질환자 소행"이라고 표현했다.

딸보다 한 살 더 먹은 사람이 "팔도 하나없는 병신새끼가 꿈쩍말고 있어라 죽여 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였다.

【폭력】

시설내 동료 사회복지사로부터 뺨과 몸을 폭행당해 전치3주와 정신적인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로 입원가료 후 통근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김밥집에 사탕을 팔러 갔다가 배가 고파 김밥을 주문했다. 주인은 안판다며 장사에 방해된다고 나가라고 한다.

【성폭력】

다른 시각장애인으로부터 몇 번 아내가 성폭행을 당했다. 그래서 신고를 했더니 이 일이 간통죄로 처리가 되었다.

【기타】

자신이 아는 룸싸롱 사장이 000씨를 15년간 감금하고 주방 일을 시켰다.

15) 재산권

<표 28> 재산권의 침해

중분류	세부항목	빈도	유효퍼센트
(50)재산상불이익(49건,87.8%)	163)사기	29	59.2
	164)절취및갈취	4	8.2
	165)상속권제한	2	4.1
	166)기타	8	16.3
(51)기타(6건,12.2%)	167)기타	6	12.2
합계		49	100.0

재산권은 47건이 접수되었는데 이중 카드사용이 빈번해짐에 따른 사기사건에 있어서 카드사기가 많이 일어났다. 가시적인 피해양상 중에서 금전적 손해에 의한 피해는 가장 직접적인 피해라고 볼 수 있다. 신체적 약점을 이용한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계산상 판단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카드를 발급받게 하거나, 사리 판단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보증을 서게 한다. 쉽게 사람을 믿는 점을 이용하여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갚지 않는다.

카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정신지체인이라고해서 무조건 카드발급 자체를 막는 것은 차별이다. 그러나 카드를 발급하여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본인이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그 가족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는 다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명의도용 등 본인이 사용하지 않는 금전적 손해일 경우 카드사나 은행 등에 이의제기 절차나 고소 등의 방식으로 접근한다. 특히 재산상 문제일 경우 법률전문가의 법적절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부자되세요란 말이 인사가 되고 있는 요즘 부자가 되기 위한 재산축적 방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재산축적 방식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겠지만, 카드나 금융권 이용시 주의점에 대하여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신용카드와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도 장애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인 과정이 되어야 한다.

[사기]

인터넷 00사이트에 친구를 만나고 싶다는 글을 올렸는데, 한 남자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메신저와 이메일로 서로 대화를 나누었고, 한번 만났다. 돈을 빌려 달라고 해서 40만원을 빌려주었다. 00카드사에 근무하며 재벌 손자라고 사칭하였다.

정신지체2급의 오빠는 구미에서 회사를 다니는데, 술집에 다니는 여자를 알게 되었다. 그 여자는 오빠에게 연대보증을 서게 했고, 주민등록등본을 가져오게 하였다. 오빠는 연대보증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다가 증언이 오락가락한다.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사람이 벼룩시장에서 대출관련 광고를 보고 대출문의를 하러 그 회사에 찾아 갔다. 그 회사의 직원들이 장애인임을 이용하여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신분증 및 통장내역서 사본 등을 제출받아 삼성카드 등 6개사에서 카드를 발급받았다.

정신지체 아들이 꽃집에서 일했는데 주인이 카드 보증을 세워 대출을 받았다.

집안 누나가 카드를 훔쳐가서 8천만원이 연체되었다. 카드사에서는 늦게 신고하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고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중증치매환자인데, 사기꾼들에 의해 땅을 이중매매하였다.

전화광고를 통해 신청된 핸드폰이 배달되어 와서 사용할 줄 모르니 가지고 있다가 해지시켜 달라고 아는 사람에게 주었다. 이에 그 사람은 몰래 4,5개월간 핸드폰을 사용하여 연체시켰다.

남동생이 본인 이름으로 사채 4백만원을 써서 협박당하고 있다. 해결사를 이용해서 본인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주면 동생이 쓴 걸로 인정하겠다고 하여 인감을 떼주어 본인이 쓴 것으로 인정되었다.

000에서 개인영업할 사람을 모집하는 광고를 보고 문의하였다. 이 업체는 물품을 자신이 받아서 판매하는 것으로 회사에서는 홍보를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물품에 대한 비용은 월9만원씩 18개월간 빠져나갔는데, 전혀 판매가 되지 않는데다 홍보약속도 회사측이 지키지 않고 하루에 12시간 이상 노동을 하기 때문에 힘들다.

회사에서 형님의 명의를 도용하여 카드를 만들어 3,4천만원을 사용했다.

25년여동안 파출부로 일했는데 어려운 사정이 생겼으며, 집주인이 카드를 빌려달라고 하여 총9개의 카드를 빌려주었다. 카드를 돌려달라고 했으나 차일피일 미루었고, 카드내역을 조사하니 엄청나게 쓰고 다녔다.

10억원만 있으면 복지법인 세울 수 있다고 하여 돈을 모아서, 복지법인을 세우지 않고 개인명의로 사업체를 차렸다. 그러다가 1차 부도가 나고, 경매로 넘어갔다. 이를 알고 이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 청각장애인을 알아보니 2/3정도는 차용증조차 없었다. 대부분이 학력이 낮고 한글을 잘 모르기 때문에 더 크게 피해를 당했다.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40-50대 무학의 농아인들이다.

[절취 및 갈취]

20년간 직장생활을 하여 모은 돈이 있는데 동서들이 이 재산을 자신들의 명의로 명의이전을 시키려 한다. 살던 집이 재개발되어 아파트 입주권이 있었는데 이사 과정에서 명의이전이 되었다.

명동성당 앞에서 노래를 부르며 구걸하는 장애인의 부인이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그를 갈취한다.

사채업자들이 자신의 차량을 아무 사전경고도 없이 빼앗아갔다. 그 차량이 없으면 현재 자신은 움직일 수 없어서 매우 답답하다.

정신지체의 동생부부가 충분히 생활할 재산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착취한다.

【상속권제한】

부모가 재산이 있으며 맏아들에게 재산을 다 물려주려고 한다. 맏아들이 동생을 책임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그러나 오빠는 사치가 심하며 빚을 많이 지고 있다. 오빠를 전혀 믿을 수 없다. 아버지는 자신에게 재산포기각서를 쓰라고 한다.

아버지가 예금 가입후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안계시다. 자녀가 세 명이 있는데, 첫째딸은 장애가 없고, 아래 동생 둘은 정신지체1급, 2급이다. 자녀들에게 똑같이 상속해야 하나, 누나가 예금을 가져갈 것같은데, 법적 상속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타】

사장이 장애인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주로 등록했고, 수급액도 사장이 쓰며, 복지카드도 쓰고 있다.

시설장이 생활자 명의(정신지체인)로 재판기 신청을 해서 당첨되었다.

정신지체 남동생이 카드를 발급받아 빚이 많다.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고용보험이 되는 업체에서 한달 정도 일했는데 그때 카드를 만든 것이다. 아버지가 계속해서 빚을 갚아 주었는데 이젠 어렵다.

정신지체 2급의 여성인데, 신용카드를 시동생에게 빌려줘서 3천만원이 연체중이다.

여동생이 이혼했으나 전남편이 여동생 카드를 발급하여 연체중이다. 남편이 욕박지르거나 달래서 카드를 발급받게 한 것이다.

아들이 강제로 보증서게 하였다.

대한주택공사에 임대아파트를 분양받고자 440만원의 보증금을 넣어둔 상태이나, 최근 가정환경의 어려움이 많아 보증금을 찾으려고 한다. 그런데 공사에서는 원금을 그대로 줄 수 없고 약 50여만원을 제하고 줄 수 밖에 없으며 그나

마도 생활형편의 어려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오라고 한다.

4호선 노원역 지하철역 아래 노점상을 하던 중 구청에서 철거해갔다. 노점상하던 기계도 빼앗기고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16) 정보제공

<표 29> 정보제공 실태

중분류	빈도	유효퍼센트
(52)장애등록	39	12.7
(53)경제영역	52	17.0
(54)의료영역	9	2.9
(55)교육영역	15	4.9
(56)노동영역	15	4.9
(57)문화영역	0	0
(58)성과결혼	3	1.0
(59)여성	0	0
(60)복지시설	18	5.9
(61)보장구	7	2.3
(62)접근권	7	2.3
(63)자동차	23	7.5
(64)법률정보	44	14.4
(65)취업	0	0
(66)기타	74	24.2
합계	306	100.0

41.3% 차지하였다. 306건의 내용을 보면 분류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유형이 가장 많았으며 정보시책 관련한 혜택에 대한 문의, 법률정보 순이었다.

기타의 내용에는 복지카드 관련한 사례가 대다수였다. 복지카드 발급받은 후 사용승인 방법, 카드사 전화번호 문의 내용이다.

장애관련한 복지시책의 다양한 내용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이를 위한 장애인전화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가정폭력 상담 1366이 방송매체를 통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하는 것처럼 폭넓은 홍보활동이 요구된다. 그래서 장애인전화가 장애관련하여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률적 자문을 필요로 하는 상담은 등록장애인에게 무료상담을 해주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지만, 실제로 전화하는 분들을 보면 구조공단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보여진다. 공단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대해 어려워하거나 또 소송을 진행하여도 국선변호사에 대한 불신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더욱이 장애에 대한 이해가 있는 변호사를 알려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을 보면 어떤 기관에서 소속되어 있는 장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절실히 확인될 수 있었다.

정보제공에 분류된 사례는 우선 생애주기별로 엮은 장애우정보집을 참고로 하여 답변을 제공한다. 장애우정보집은 연구소에서 2002년부터 1년에 한번씩 보완하여 발간하고 있다. 생애주기별 장애복지에 대하여 유아·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전생애별로 필요한 정보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법률정보에 관해서는 인권센터 법률위원 10명의 자문을 얻어 답변을 얻거나 필요한 경우 직접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소송이 진행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등록 관련 문의는 장애인정 여부, 절차, 장애범주, 정신장애 등록후 소멸 방법, 장애진단 등이다.

경제로 분류된 사례는 용자 관련 문의, 시책과 관련한 전반적인 할인혜택 등으로 분류하였다. 각 분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

의료비 지원, 장애인전용 치과 등 병원문의,

【교육】

교육기관문의나 기숙할 수 있는 학교 문의

【노동】

개인적 상황에 대한 내용없이 부업이나 취업 문의, 장애인 직원 구인

【성과결혼】

장애인결혼상담소 및 성상담소 문의

【복지시설】

시설의 위치, 입소비, 입소 문의, 적절한 치료기관

【보장구】

휠체어 대여 신청, 보장구 신청시 혜택, 의료보험 적용관련

【접근권】

이동시 도우미 지원, 음성지원프로그램 신청 방법,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와 관련된 법규 및 과태료 문의

【자동차】

차량개조 가능여부, 차량개조 사업소, 면세나 감면혜택, 압류대상 여부문제 등이다.

【법률정보】

이혼소송 절차 및 서류, 양육비 청구소송, 공증시 첨부서류, 채권채무 소송, 임대차계약, 법령요구, 회칙 준비 과정시 도움요구 등

【기타】

복지카드 관련한 모든 문의, 콜택시와 기관 전화번호문의, 장애인전용보험, 일반적 혜택, 임대주택 신청 자격, 로또복권 판매 신청 자격, 장애우정보집 및 시책 리플렛 요구

장애등록과 경제영역, 기타영역중 장애관련 혜택 부분을 묶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장애등록시 동사무소에서 장애관련한 복지시책에 대한 세밀한 안내가 필요하고, 시책이 바뀔 때마다 방송매체 활용 등의 방식으로 적극적인 안내가 이루어져야 한다.

17) 정책건의

<표 30> 정책건의 실태

중분류	빈도	유효퍼센트
(67)장애등록	4	25.0
(68)경제영역	3	18.8
(69)의료영역	1	6.3
(70)교육영역	0	0
(71)노동영역	1	6.3
(72)문화영역	0	0
(73)성과결혼	0	0
(74)여성	0	0
(75)복지시설	0	0
(76)보장구	0	0
(77)접근권	1	6.3
(78)자동차	3	18.8
(79)법률정보	0	0
(80)기타	3	18.8
합계	16	100.0

정책건의는 16건으로, 국내거소증 소지자 장애등록 요구, 교도소내 장애들의 처우개선 필요함,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장애범주 확대 요구, 전신마비 장애의 활동보조인에 대한 지원, 내부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 시급함 등이다.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할 때 당사자의 목소리가 직접 표출이 되어야 한다. 단체의 힘을 적극 인정해서 전화를 통해 정책제안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당사자가 주장하는 것은 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전화로 제안하시는 분들에게 연구소에 제안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능하다면 인터넷 신문고나 복지부 민원제기를 하라고 권유한다.

장애범주 확대의 문제나 거소증 장애등록이 안되는 사례는 계속 접수된다.

【장애등록】

국내에서 세금도 다 내는데 거소증 소지자라고 장애등록이 안되고 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판정을 받아 UCLA 대학병원과 미국 의사협회(AMA)로부터 장애판정을 받았다. 국내에 들어와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장

애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며 장애등록을 거부하고 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데 어머니는 중풍이시고, 생활비의 2/3가 차비로 든다. 차비를 올리겠다고 발표했는데 생활이 너무 힘들다. 버스도 감면되어야 한다.

【경제영역】

장애3급과 차이도 없는데 4급이라는 이유로 장애수당을 받지 못한다.

【의료영역】

복지혜택은 내부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많이 없다. 내부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의료비 지원이 시급하다. 장애에 따라 복지혜택을 달리했으면 좋겠다.

【노동영역】

샌프란시스코의 한 공원에서 휠체어를 탄 경찰관을 보았다. 공무원 채용시 장벽을 없애 달라. 공직의 선발기준을 장애인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 경찰이란 직종이 사이버 범죄를 해결해야 될 일도 있지 않은가?

【접근권】

장애등급에 구분없이 장애인 차량스티커를 발부하는 것과 전용주차장에 똑같이 주차하는 것은 문제이다.

광주교도소에는 100여명 정도의 장애인수형자들이 있으며, 장애인교도소라 하여 따로 편성되어 있다. 그러나 편의시설도 되어있지 않고, 장애를 고려한 복지지원 및 복지후원금이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을 원한다.

【기타】

5년전 퇴근길 교통사고로 전신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지체1급을 보면 양팔장애나 양다리장애도 1급인데, 전신마비의 경우 더 심하다. 따라서 활동보조인이나 기타의 지원이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하다.

18) 정서적 지지

<표 31> 정서적 지지

중분류	빈도	유효퍼센트
19. 정서적지지	9	100.0

정서적 지지에 대한 상담은 9건으로 주변에서 이해받을 수 있는 지지 기

반이 전혀 없는 경우 생활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적극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다가 사업실패로 힘들어 할 때 등 주변에서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의 상담내용이 이에 해당한다. 장애아동을 둔 엄마로서의 책임감과 부담감을 누구와도 나누지 못한다. 일상적인 문제들 남편과의 대화부재, 무시, 큰 아들의 무단 결석 문제 등을 토로한다.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도 필요하겠지만 장애가 있거나 장애 가족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같이 지지받을 수 있는 상담소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본다.

19) 기타

<표 32> 기타상담

중분류	빈도	유효퍼센트
20.기타	23	100.0

기타의 영역은 23건으로 상담유형 틀로 분류가 어려운 상담내용이다.

교도소의 장애인 수용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기를 원하거나 성행위 묘사를 하기 원했던 사례 등이다.

III. 상담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과제

문제상황에 직면해 있는 당사자의 분노, 억울함, 불쾌함, 답답함을 공감하고 이해해야 하는 모든 상담이 제대로 진행되기는 쉽지 않다. 단순 정보제공에 있어서는 관련 정보수집을 통해서, 법률상담에 대해서는 법률위원들을 중심으로 자문을 얻거나 직접 연계를 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상담전화를 받으면서 기운이 빠지거나 화가 나는 상담도 있고, 어디까지가 인권상담의 역할이어야 하는지 혼란스러움에 빠지기도 한다. 스스로의 무기력함에 화가 나기도 한다.

자료를 준비하면서 가장 처음으로 1년간 활동하면서 겪었던 어려운 점과 만족스런활동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아쉽게도 어려운 점은 쉽게 떠올랐는데, 힘이 되고, 만족감을 느꼈던 사례를 찾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1년간 상담을 진행하고 또 정리하면서 느낀 어려운 점을 중심으로 과제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는 한 가정의 책임일 뿐인가?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부모 둘다 가정경제를 책임져야 하고, 부모가 돌아가신 상황에서 신변처리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사고를 칠까봐 등의 이유로 시설로 입소시켜 평생을 살게 하고 싶다면 시설 문의를 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정신지체 장애일 경우, 부모사망 후 누가 돌볼 것인가를 걱정하다가 가정내 보호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시설 추진을 하는 사례들을 대하게 된다. 사후 문제까지도 가기 전이었다. 집에서 같이 있어도 아빠에 의해, 학교에 의해 거부당하는 아들, 정신지체 아들에게 욕설을 듣고, 맞기까지 하면서 지쳐 가는 상황에서 시설 입소를 추진하는 어머니.

이렇게 현실에 지친 상담의뢰자를 대할 때 시설의 문제점을 설명하면서도 힘 있게 만류하기가 어렵다. 그 가정의 현실적 상황이 '도저히' 어렵다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그 부모에게, 가족에게 어떤 답변을 주어야 하는지, 다른 대안이 없어서 가슴이 아프다. 이들 가족들에 대한 상담지원, 경제적 지원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법·제도적인 접근으로 해결이 안되는 경우 대안이 필요하다.

명백하게 잘못된 사회적 관행이라고 인정될 수 있음에도 공권력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고 시정되지 않을 때 너무나 답답하다. 언론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보도되었던 정신지체 3급의 17세 청소년이 현행범이 아님에도 도둑으로 오인되어 경찰서에 신고되었고 결국 기소유예처분이 떨어졌다. 이 과정에서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정신지체 3급으로 평생을 살면서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전과가 쌓이게 되면 어떡하냐"고 울분을 떠뜨리며 억울해 하였다. 그럼에도 검찰은 해당 학생의 장애 상태를 확인한 이후에도 진정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헌법소원과 국가 인권위에 진정서 접수를 하였음에도 누구도 무죄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 남는 것은 정신지체 장애인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가 최소한의 보호막도 되지 않는다는 허탈함 뿐이었다. 현재 이에 대해서는 비슷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법개정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 높지 않은 상황에서

언제든 비슷한 상황이 또다시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 아무런 대안이 없다는 것은 활동가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셋째, 접수되는 모든 사례에 대해 접근이 어렵다.

진행시키고 있는 상담이 있음에도 초기 접수시 상담의 위급성이나 명백한 장애차별이라는 판단이 설 때 우선 선위로 활동하는 상담이 되고 그 상담을 진행하느라 다른 상담사례가 뒷전이 되어버린다. 그러다보면 몇 일이 흐르고 그 후 답변을 주기에 애매한 상황이 되어버린다. 이런 것이 반복이 되다보면 항의를 받거나 그냥 묻혀지는 사례로 남는다. 인권센터에 접수되는 모든 사례 하나하나가 문제상황의 당사자에게는 절실하고도 절박한 문제이고 그러기에 매우 소중한 내용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빠른 시간내에 혹은 적절한 답변이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스런 마음이 크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4명의 활동가가 끝없이 이어지는 상담내용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낸다는 것은 역부족이다. 특히 지방으로부터 심각한 인권침해 상담이 접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지역적 접근 등으로 더욱 어려워진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장애인 인권상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에 앞서 장애인 복지관과 장애인단체에서 인권상담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또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내용에 따른 대처방법에 대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다양한 자원인력이 인권상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넷째, 정신장애인의 상담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부족하다

문제상황을 설명하지만 장애를 이유로 한 상담인지, 사실인지 분간이 어렵다. 얘기를 듣다가 복용하는 약이 있는 지를 물으면 약을 먹는다고 대답한다. 그 순간부터는 정신장애로 인한 상황제언인지 사실인지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전혀 없어진다. 오로지 들어주기만 할 뿐이다. 지역정신보건센터로 연계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매 사례마다 연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심한 우울증에 의한 단어 고착, 예를 들면 병원에 갔는데 다른 환자분이 결혼을

했느냐는 질문에 마구 화를 내었다면서 자신은 '결'자도 들으면 안된다(결혼을 안했기 때문에)고 의사가 말했다고 한다. 또 구청의 공무원이었는데, 직장동료들이 자신이 시험공부하는데 방해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병을 얻게 되었다면서 그들에게 전화하면 '피', '피'하는 말을 한다고 한다.

정신장애인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들어줄 수 있으며 가능한 당사자 입장에서 대안을 찾아나갈 필요가 있음에도 사실상 쉽지 않다. 대개의 장애관련 상담기관에서도 정신장애인의 상담에 대해서는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신장애로 인한 상담이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상담원이나 활동가들이 정신장애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거나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장애차별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가해자에게 분노감을 유발하는 경우

상담을 받으면서 느끼는 점이 대개 악의적으로 상대를 차별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려하기 보다는 상대방의 인권에 대한 무지함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인권센터에서 다루어진 몇몇 사례에서 대응책의 하나로 인권교육 실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다. 직접적인 피해 보상이나 사과도 중요하지만 사안에 대해 강한 질책을 가하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편견과 분노감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갈등을 겪곤 한다. 따라서 처벌에 앞서 다양한 연령과 계층에 맞는 인권교육 또는 인권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국가적 노력과 지원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여섯째, 늘 새로운 내용의 차별상황에 대한 대처가 어렵다

사회는 늘 변화하기 마련. 그런 의미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이 겪는 차별적 상황과 인권침해 내용도 쉽게 규정할 수 없다. 때로는 상담을 받는 입장에서 차별감수성이 따라가지 못해 개인적 상황으로 덮어두고 가는 경우도 많았음을 고백한다. 당사자에게 너무나 절실한 문제인데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없

는 경우 무기력감을 느끼곤 한다. 그나마 막연했던 장애 차별에 대해 유형화한 것은 나름대로 큰 의미를 지니지만 또다시 더욱 세분화하고 다시 유형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그런 의미에서 차별을 일일이 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애로 인한 차별에 대해 권한을 가지고 조사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장애차별시정기구'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이 하루속히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한다. 특히 장애차별은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많은데 지금의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권력에 의한 차별 또는 침해사건만을 다루기 때문에 대개의 장애차별 상담내용이 인권위의 진정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장애차별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살펴보면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단적으로 너무도 심각한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는 일부 미신고시설에서의 인권침해사안은 인권위 진정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미신고시설에 대한 조사권한을 가질 필요도 있으나 또 다른 장애차별 대응 기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민간보험사 장애차별의 문제

조병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간사)

2003년 장애계의 큰 흐름 중 하나는 "생존권"의 문제를 넘어 "문화 및 소비자로서의 향유에 대한 권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한 해였다. 그중 소송을 통해 민간보험사 장애차별의 문제를 담론이나 운동이 아닌 법적 테두리 안에서 확인받을 수 있었다는 점은 2003년 장애계가 얻어낸 소중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이는 △거대자본에서 이야기하는 형평성과 효율성의 논리가 한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것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점, △장애는 사람이 가진 특성 중 하나일 뿐 사람 자체를 판단하고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주로 지난 2003년 조○○(趙炳贊, 27, 회사원)씨가 푸르덴셜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경위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해석해보도록 하겠다.

1. 사건의 발단

지체1급 장애인 조○○(趙炳贊, 27, 회사원)씨는 지난 2002년 9월경 동료의 소개로 푸르덴셜 생명보험(이하 보험사) 보험모집인을 직접 만나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종신 보험 계약서를 작성 후 1회분 보험료를 납입했다.

조씨는 "보험 가입 당시 민간보험에 있어서 장애에 따른 차별이 있어온 것을 알고 있었지만 보험료를 낼만한 충분한 경제력이 있고 당시까지 큰 병치레가 없던 터라 보험가입상 약간의 불이익은 있을지언정 보험가입자체가 거부되리라 생각하지는 않았다. 다만 만일을 생각해 모집인에게 △장애1급이기는 하지만 통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도보는 물론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과거 병력이 없기 때문에 보험사가 원한다면 보험사가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약서에도 장애1급이라고 명시하고 건강검진을 요청하는 글도 기입했다.

물론 계약서상 장애1급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보험 모집인에게 “장애와 장애는 다른 개념”이라고 수차례 강조했고 만약 이를 이유로 가입이 거부될 경우, 이 조항에 대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종신보험 계약서에 서명한 조씨는 1회분 보험료도 납부했기 때문에 보험 가입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으나 보험사측은 보험 계약 청약서를 작성한지 30일이 지나서야 '장애인은 가입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일방적인 파기 통보를 해왔다.

이에 대해 조씨는 “보험사측이 분명하게 자신이 장애인임을 말하고 이에 대해 정밀검진까지 요청한 고객에게 최소한의 논의절차도 없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고 보험사에 수차례 항의전화를 했다. 이에 보험사가 보험 모집인을 통해 전달한 답변은 “장애1급만 아니면 되므로 재검진을 받아오라”는 것이었고 이후로도 보험사는 이 이야기만 되풀이했다. 이에 조씨는 “장애등급과 장애등급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했음에도 이를 같은 것으로 고집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또 같은 장애1급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특성마다 나타나는 장애정도가 다르는데 이를 한데 묶어 거부하는 것 역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 마지막으로 장애진단을 다시 받아오라는 것 역시 뇌병변장애가 진행성 장애가 아님으로 재진단한다고 해서 등급이 변경되지는 않는데 이런 진단을 굳이 소비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재진단을 원한다면 보험사가 비용을 부담하라”고 답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이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조씨는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뒤, 연구소 인권센터에 상담을 해왔고 당시 여준민 담당간사는 조씨에게 “분명한 차별”임을 강조하며 추후 푸르덴셜을 상대로 소송하기를 권했다.

2. 구제방법에 대한 논의

인권센터 여준민 간사를 통해 소개받은 임성택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는

조씨와의 수차례 면담을 통해 구제방법에 대한 논의를 했다. 당시 임변호사가 제시한 방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 진정 △금융감독원 진정 △소비자보호원 고발 △법원에 민사소송 청구 의 네가지였다.

임변호사는 이중 금융감독원과 소비자보호원의 경우, 문제를 이슈화하고 긍정적으로 진행된다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보상은 물론 재가입도 가능하지만 민간영역에서의 문제라서 어느 정도의 구속력이 발생할지 의문이고 민간상 거래의 문제로 보아 문제제기 자체가 거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인권위에 진정하는 방향은 논의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신뢰도는 높지만 인권위 역시 공공영역의 문제가 아닌데다가 인권위의 심의는 인권침해가 이루어졌느냐 아니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하나의 대안을 가지고 구속력 있게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법원을 통한 민사소송은 판결에 따른 구속력은 매우 강하지만 판결이 날때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보험인수를 명령할 수는 없고 다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고 말했다. 또한 사법부 판결 자체가 대단히 보수적인 경우가 많아 승소에 대한 가능성이 그만큼 낮다는 점을 강보했다.

임변호사와 논의 끝에 조씨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승소를 장담하기 힘들더라도 판결 이후 구속력을 감안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고 2003년 4월 28일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3. 소송과정 중 나타난 쟁점사항들과 판결이 가지는 의미

조씨가 푸르덴셜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은 판결이 날 때까지 세 번의 변론기회를 가졌다. 소송을 통해 보험사(피고)측은 우선 민간보험은 서비스제공자와 수혜자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서로간의 계약을 맺고 안맺고의 문제는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한다고 하면서 원고의 소송제기는 오히려 이러한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 또는 수시로 간호를 받아야 하거나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을 때 보험청약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한 장

애인보험공통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의 장애1급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합리적 차별이었음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황문섭 판사는 "보험사는 위자료 200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는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 심사기준은 통계적 수치나 과학적 근거 없이 개개인의 장애 정도 등을 무시한 상태에서 장애등급에 따라 포괄적으로 적용돼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한 거절 행위는 장애인 차별을 금지한 장애인복지법 8조를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합리적인 통계 원칙이나 전문가의 과학적 진단에 따라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혜택을 일부 제한하는 것까지 부당하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는 결국 '장애차별 입증책임'이 '차별을 받은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동등하게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하겠다. 실제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애차별 입증책임'에 대해 "장애인이 어떤 행위나 제도로 인해 차별을 받았을 경우, 이에 대한 장애차별을 입증하는 노력을 스스로 해야 하지만, 이와 동시에 서비스제공자나 사용자 역시 그 행위나 제도에 대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통해 '합리적 차별'임을 입증할 의무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해석은 이제껏 장애차별 입증에 있어 장애인 당사자의 입증책임만을 요구했던 기존 인식을 뒤집은 것이어서 이후 장애차별과 관련한 활동에 있어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법 제732조에 관한 문제제기

임성택(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1. 서론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두게된 근거에 대하여는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는 위와 같은 동의를 할 능력이 없으므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상법 제732조가 마련되었다"고 설명되고 있다. 우리 대법원도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타인의 서면동의를 요구하는 이유는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외에도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타인의 사망을 이른바 사행 계약상의 조건으로 삼는 데서 오는 공서양속의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도 들어있다"고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 37084 판결).

상법 제732조에서 '심신상실자'란 자기의 행위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할 능력 즉 의사능력이 없는 자를 말하고, '심신미약자'란 심신상실의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판단력이 불완전한 자를 말하므로, 정신장애가 있는 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그 정도 및 경위를 불문하고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다.

그런데 상법 제732조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타인의 생존을 조건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른바 생존보험)나 상해보험 등에는 해당되지 않는다.⁵⁾ 그러나 우리나라의

생명보험 업계에서는 생존보험이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지 않는 보험상품(예컨대 상해보험, 교육보험에도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정하고 있음)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신장애인은 그 장애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사실상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한편,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도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상법 제732조가 정신장애인 또는 그 가족의 행복추구권, 계약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의 조항이 아닌가하는 문제가 제기된다.⁶⁾

2. 상법 제732조의 위헌 여부

상법 제732조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합헌론과 위헌론이 나뉠 수 있다.

가. 합헌론

동 규정의 입법취지가 사망보험의 악용으로 인한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고, 오히려 정신지체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헌법에 합치된다는 견해이다. 즉 심신상실자 등은 일반인에 비하여 자기보호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을 허용할 경우 보험금을 노린 살인을 비롯한 도덕적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5) 상법 제732조는 상해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상법 제739조는 “상해보험에 관하여는 제732조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은 유효하다.¹⁾ 이에 관하여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를 달리하는 “타인을 위한 상해보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통설인 만큼 보험계약자가 상해보험금청구권을 피보험자에게 부여하는 계약을 막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되고 있다.

6) 실제로 금융감독원의 민원 중에는 보험가입 전에 정신분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한 후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위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안에서 신청인이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무려 9경 7조원을 지급해줄 것을 청구한 사안이 있었다. 위 사안에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는 상법 제732조를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이고, 가사 무효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보험가입 전 피보험자가 정신분열증을 앓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보험회사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조정결정을 내린바 있다.

매우 높기 때문에 정신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필요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편, 보험은 본질적으로 위험 및 동질적인 위험 단체를 전제로 한 것이고 위험 인수와 보험료 지급 사이에 균형이 요구되는바, 심신상실자 등의 사망보험의 경우에는 그 위험도가 지나치게 높아 이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위험단체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도 하나의 논거로 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위헌론

동 규정이 정신장애인을 보호하는 취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들의 생명보험 가입을 근본적이고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그 합리적 차별의 이유가 없고 행복추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는 견해이다. 즉 정신장애인도 생명보험의 피보험자에서 배제될 근본적인 이유는 없으며, 특히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자신의 사후에 그 자녀가 생계를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하도록 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고, 오히려 이것은 일반인보다 더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임에도, 정신장애인임을 이유로 하여 이러한 자유와 권리를 근본적으로 박탈함은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견해이다. 또한 이 견해는 동 규정의 입법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심한 노이로제 환자나 정신병자 등이 민법상의 의사능력이나 행위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들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에 대하여 동의를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정신장애의 경중을 가리지 아니하고 특히 한정치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심신미약자의 경우에도 무조건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본다. 특히, 의사능력이나 행위능력이 의문시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기타 다른 자 또는 방식에 의한 동의의 여부나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봉쇄하고 있는바, 이 역시 합리적 이유가 없거나 지나친 제한이라고 보는 것이다.

위헌론의 논거로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에서의 위험방지를 위한 입법례를 보면, 피보험자의 동의를 요하는 ‘동의주의’ 이외의 다른

입법례들이 존재하고 있고,⁷⁾ 우리와 같은 동의주의를 취하는 일본 상법에서도 피보험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조항은 있으나 우리와 같이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는 조항이 없다는 것도 들 수 있을 것이다.

3. 결론

개인적인 견해로는 상법 제732조는 앞의 위헌론에서 든 이유에서처럼 위헌적 요소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정신장애인의 경우 위 조항을 이유로 그 장애의 경중을 떠나 더욱이 보험의 종류를 가리지 아니하고 전면적으로 보험가입이 금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 상법 규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정신장애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금을 타기 위하여 살인 등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라고 하나, 이러한 도덕적 위험에 대하여는 보상거절, 형사처벌 등의 수단으로 제재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 동의한 때에는 동의의 무효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그밖에 법정대리인을 통한 동의절차를 배제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법 제732조는 조속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7) 영미법계에서는 '이익주의'를 주로 채택하고 있는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생존에 대하여 일정한 이해관계, 즉 피보험이익을 가지는 것을 계약의 요건으로 삼는 방법을 말한다. 또한 보험수익자의 자격을 피보험자의 상속인이나 일정 범위의 친족으로 제한하는 '친족주의'의 입법례도 있다.

‘장애’ 그 자체로 죄가 되는 세상

김좌진(변호사, 오성합동법률사무소)

1. 들어가며

제가 ○○이를 만난 것은 2003. 1월경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였습니다. 당시 저는 연수원 실무수습 중이었고, 연구소에서 법률상담활동을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를 처음보았을 때 ○○이는 어머니와 함께 왔는데 어머니와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이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우인 사실을 알았고, 마주 앉아 이야기 하면서도 ○○이는 매우 산만했습니다.

2. 사건의 개요

가. ○○의 성격

○○이는 당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학교생활은 선생님과 학우들 사이에 큰 문제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생각해서 자기가 하였다고 말하는 버릇과 방과후 학교 주변이나 서울시내를 지하철을 타고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해서 학교가 끝나면 지하철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특히 교회를 매우 좋아하여 자기 주변에 교회에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나. 사건의 발생

위와 같은 성격이 있는 ○○이는 2002. 11월 초순경 수업중에 나와 돌아다니다가 공릉동에 위치한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교회에서 서성이던 성만이

를 그 교회의 관리인이 인근 경찰서에 신고하였습니다. 교회의 자판기 돈, 자전거, 성경책 등을 빈번하게 도난당하던 차 ○○이를 의심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에 연행되어 수사를 받던 중 자꾸 교회에서 무엇을 훔쳤는지 캐묻자 자판기에 있는 동전을 훔쳤다고 거짓 자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 검사의 사건처리

위와 같이 ○○이가 거짓 자백을 하자 검사는 ○○이를 검찰청에 불러 신문을 하려 했으나 ○○이가 자꾸 탄소리를 하고 다른 사람과 다른 행동을 보이자 신문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에게 죄가 있으나, 그 처벌은 미룬다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 후 ○○이의 어머니가 수사가 잘못되어 무혐의 처분이 있어야 할 사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며 다시 수사를 해줄 것을 검찰청에 진정 등을 하여 요구하였으나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라.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1) 헌법소원의 제기

우리나라 법제도 속에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잘못된 것을 심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수 밖에 없어서 저는 조창영 변호사님의 도움을 얻어 이 처분을 다투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검사가 잘못된 수사의 내용은 ① ○○이가 잠겨있는 자판기를 어떻게 열고 돈을 훔쳐갈 수 있는지에 대한 수사의 미진 ② 관리인이 ○○이가 돈을 훔쳐갔다고 진술하였다가 번복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않은 점 ③ ○○이가 돈을 훔친 10월 초순은 ○○이가 다니는 학교 시험기간이어서 ○○이가 다른 곳에 갈 수 없었는데 이러한 점을 확인하지 않은 것 ④ 수사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고 더구나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검찰 수사도 없이 일방적으로 기소유예를 한 점 등을 검사 처분의 위법한 점으로 지적하였습니다.

(2) 헌법소원의 결과

그러나 위 헌법소원은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정확히 틀린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에서는 기각되었습니다.

3. 사건의 교훈

위 사건에서 보여지듯이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장애우들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수사방법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죄를 짓거나, 다른 사람의 일을 자기가 한 일로 뒤집어쓰는 피해사례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점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수사절차에서 보조인의 선임이 의무화되는 등 수사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절차상 장애인인권침해 사례와 개선방안

박숙경(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팀장)

1. 들어가며

지난해 최고의 영화 '살인의 추억'은 우리나라 수사과정에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열악한 수사환경에 의해 자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수사관들은 정신지체장애인을 상대로 가혹행위와 협박등 갖은 수단을 동원한다. 겁을 먹은 용의자는 결국 허위자백을 하고 수사관은 현장검증 등 이를 뒷받침할 정황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간다. 다행히 영화에서는 그가 진범이 아니었음이 다른 수사관에 의해 드러난다.

우연히도 지지난해 최고의 영화로 꼽혔던 '오아시스'에서도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드러난다. 주인공은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여성이다. 가족들은 그녀가 애인과 사랑을 나누는 상황을 '강간'으로 오인하고 경찰에 신고한다. 언어장애가 있는 그녀가 아무리 상황을 설명하려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 당사자인 그녀는 진술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애인은 강간범으로 교도소에 갇히게 된다.

기가 막히게도 영화에서나 가능할 것 같은 이러한 상황은 현실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이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 겪는 수사상 인권침해는 어떤 모습으로 벌어질까? 이 글에서는 인권센터에서 그동안 형사절차상 벌어진 인권침해 사례와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점을 줄여나가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2. 수사상 장애인인권침해 사례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1】

수사기관의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발생한 침해사례

정신지체 3급이면서 자폐성향을 보이는 18세의 고등학생인 홍군은 수업시간중 학교근처를 배회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2002년 11월 수업시간중 학교근처의 교회를 배회하다가 관리인에게 발견돼 파출소로 현장연행되었다. 관리인은 예전에도 교회에서 자판기 돈이나 성경책이 없어진 일이 있었다고 귀뜸했고 이에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홍군을 추궁하였다. 미성년자인 홍군은 교복을 입고 있었으며 '자폐성향'이 있던 터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장애'가 있음이 확인되는 상황이었지만, 조사를 마칠 때까지 보호자나 학교로 연락이 가지 않았다. 겁을 먹은 홍군은 '허위자백'을 하게 되었고 이를 토대로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다.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고 나서야 연락을 받은 홍군의 어머니가 검찰로 찾아갔지만 검사는 어머니를 사무실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한 채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현장범이 아닌 상황에서의 현장체포, 여죄추궁, 보호자에게 연락하지 않는 등 경찰의 납득할 수 없는 조사과정과 이를 토대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검찰에 대해 어머니는 '인권센터'로 전화를 걸어 항의하였으며 결국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당하였다. 홍군의 어머니는 아무런 물증도 없는 상황에서 정신지체를 가진 미성년자의 자백만으로 '유죄판결'과 벌반 다를 바 없는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져야 했는지 당시 상황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2】

무리한 여죄추궁과 장애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H씨에 대한 수사상 인권침해

성남 중부경찰서 강력계에 근무하는 김경사, 오경장, 최경장은 2001. 2. 21. 오전 11:0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의 한 오락실에서 오락을 하던 한씨(23세, 남, 정신지체 2급)에게 다가가 몇 가지 질문을 한 후, 무슨 의미인 줄 몰라 '네, 네'라고만 대답하던 한씨를 경찰서로 데려가 신문하여 피의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아내고 진술서를 쓰게 한 후, 당일 현장검증 및 범행재연을 실시하고 하루동안 경찰서 유치장에 가둔 후 2001. 2. 22. 20:30경에 석방했다. 그 후 검찰에 송치됐으나 2001. 5.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검찰수사기록 중 의견서에 따르면, 1차례의 가정집과 4차례의 지하철